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일시: 2017년 5월 19일(금) 13:00~17:00

장소: 이비스수원호텔 깎느홀(3층)

주최: **NEXT경기**

주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펴낸이_ 오경석

역은이_ 이경숙

펴낸날_ 2017. 05.

펴낸곳_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번 (초지동 667-2) 4층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_031_492_9347

전송_031_492_9349

누리집_www.gmhr.or.kr

꾸미고 찍은_윤기희 (070.7716.832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과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개발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정책개발과정에서 외국인 주민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 외국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
- 인권 상담과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방안 연구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Program 프로그램

| | |
|---------------|--|
| 12:30 ~ 13:00 | 접 수 |
| 13:00 ~ 13:40 | 개회사 축사 기조발제 이주와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이태주 교수 (한성대학교) 기념촬영 |
| 13:40 ~ 14:50 | 사회_ 김현미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 1 이주노동과 인권에 기반한 개발 신지원 교수 (전남대학교) 발표 2 호혜적 개발을 위한 각국의 귀환 프로그램 및 이주민의 초국적 사회 자본 조영희 연구위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주제발표 발표 3 한국적 상황에서의 이주를 매개로 한 호혜적 개발의 모색 이정환 교수 (충주대학교) 토론 김미선 상임이사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이규용 연구실장 (한국노동연구원) 임선영 전문관 (국가인권위원회) |
| 14:50 ~ 15:00 | 휴 식 |
| 15:00 ~ 16:10 | 사회_ 한건수 교수 (강원대학교) 이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여 사례발표 몽골: 이라 (전, 경기도의회) 필리핀: 유진 도쿄이 (산 카를로스대학교) 베트남: 원옥금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장) 토론 이동화 의원 (경기도의회) 정현주 교수 (연세대학교) 이해웅 연구원 (제주가족여성연구원) |
| 16:10 ~ 16:20 | 휴 식 |
| 16:20 ~ 17:00 | 사회_ 박홍순 교수 (호남신학대학교) 종합토론 이주, 인권, 호혜적 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기초발제 009 이주와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이태주 교수 (한성대학교,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원장)

주제발제 015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이주노동과 사회적 개발의 관점에서
신지원 교수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039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과제
: 송출국과의 협력 및 이민자의 역량 활용
조영희 연구위원 (IOM이민정책연구원)

053 한국적 상황에서의 이주를 매개로 한
호혜적 개발의 모색
이정환 교수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토론문 061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이주노동과 사회적개발의 관점에서
김미선 상임이사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067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과제
: 송출국과의 협력 및 이민자의 역량 활용
이규용 연구실장 (한국노동연구원)

073 한국적 상황에서의 이주를 매개로 한 호혜적 개발
임선영 전문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사례발표 079 **한국 거주 몽골 이주민 사회활동 현황**
이라 회장 (전, 경기도의원 / 재한몽골인단체총연합회)

087 **2017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 필리핀 사례**
유진 도쿄이 신부 (산 칼로스대학교)

103 **재한 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본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중심으로**
원옥금 대표 (재한베트남공동체, 서울시외국인명예시장)

토론회 113 **한국 거주 몽골 이주민 사회활동 현황**
이동화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117 **이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여
: 필리핀 사례**
정헌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123 **재한 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본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응 연구원
(제주가족여성연구원 / 전 서울시외국인명예부시장)

참고자료 127 **2017년 경기도 다문화가족과 업무개요**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기조발제

이주와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이태주 교수

(한성대학교,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원장)

- 인권기반(HRBA) 개발의 원칙: 참여(participation), 책무(accountability), 자력화(empowerment), 반차별(non-discrimination)
- 호혜적 개발:
 - 1) 공여국과 수혜국이 파트너로서 동반 상생 발전
 - 2)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
- 이주민의 중요성과 삼중적 지위: 출신국에서 개발의 엔진 역할, 이주국에서는 차별 받는 취약 집단, 양국 간 협력과 소통 증진 역할

인권기반 호혜적 개발이란?

- 유엔 2030 지속발전목표(SDG) 는 이주민의 권리 강조
- 포용적 성장과 지속발전에 이민자들의 긍정적 기여 인정
- 국제이주는 출신국, 통과국, 수용국 모두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현실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이주민의 지위에 관계 없이 완전한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안전하고 질서가 보장된 정기적 이주를 보장하는 국제협력이 중요
- 난민을 수용하는 개도국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고 이주자의 본국 귀환 권리 보장이 중요함

지속발전목표(SDG)와 이민

- 개발도상국의 건강한 노동력 강화(3.c)
- 해외 장학금 지원 증대(4.b)
- 인신매매 근절(5.2, 8.7, 16.2)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8.8)
-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 촉진(10.7)
- 해외송금 수수료 경감(10.c)
-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정체성 확립(16.9)
- 이주민들에 관한 차별화된 데이터(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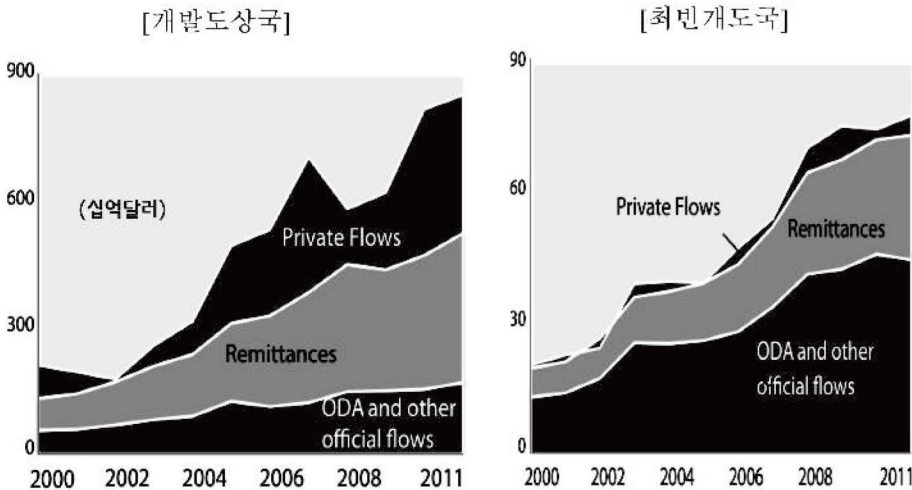
SDG와 이주민 권리 증진 세부목표

- 외국인 혐오주의 근절
-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한 통합 증진
- 이주노동자 채용 비용 경감
- 수입의 이전성 증대와 자격 인정
- 신속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해외송금 촉진
- 해외송금의 생산적 활용 증대
-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 금융조치의 부정적 결과 최소화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AAA)

- SDG(10.7) 불평등 완화 목표
- “계획되고 제대로 관리된 이민정책을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이주와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facilitate 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
- 사후조치와 데이터에 기반한 이행 평가(74g)를 위해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민자, 장애인, 지역 차이 등을 포함한 차별화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접근 가능한 적기의 데이터와 이행 평가의 중요성 강조

불평등 완화와 이민자



이주자 송금과 개도국의 개발 자원

자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2014), 권유 발표자료 재인용

- 전지구적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위한 개발협력
- 세계적 불평등과 부정을 완화하는 개발협력
- 시혜가 아니라 보편 인권을 신장하는 개발협력
- 오래된 잘못된 원조관행을 개혁하는 개발협력
- 법, 제도 뿐 아니라 사고방식과 행동, 생활의 변화를 위한 개발협력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내와 국외에 보편적으로 변화를 촉발시키는 개발협력
- 원조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개발협력
- 이러한 새로운 개발협력의 변혁적 패러다임에 이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주와 변혁적(transformative) 개발협력

1. ‘글로벌 브레인 코리아 네트워크’ 추진(매년 개발도상국 브레인의 한국 초청 유학사업 10만 명 추진)
2. 이주와 지속발전 정책일관성(PCSD) 촉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 마련
3. 난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ODA 지원 확대
4. 개발도상국 귀환 이주민 단체 역량강화 집중 지원
5. 인권에 기반한 접근(HRBA) 주류화
6. 이주민들과 귀환 이주민의 평생 교육권과 교육시설 확충, 교육 접근성 제고 지원
7. 귀환 이주민과 난민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모범적인 포용적 개발 사업 추진

이주민을 통한 포용적 개발협력 실천 과제 제안



Q&A..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국제개발포럼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이주노동과 사회적 개발의 관점에서

신지원 교수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에 대한 대안적 접근:

이주노동과 사회적개발의 관점에서¹⁾

1. 들어가며

‘이주-개발의 연계성(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은 전혀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1960년대부터 국제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개발/저개발이 이주의 배출요인(push-factor)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주분야 연구자들과 관련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이주와 개발의 상호연관성을 둘러싼 오래 묵은 논의가 정책입안자와 국제기구를 통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며 새로운 정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은 UN이 주관한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2003-2005)’이다. 당시 UN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nnan)은 이주와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정기적 심의포럼(consultative forum)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2007년 제1차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GFMD)’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2014년 제7차 GFMD는 “포괄적 개발을 위한 이주의 가능성을 밝혀내다(Unlocking the potential of migration for inclusiv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2015년은 터키, 2016년은 방글라데시, 그리고 2017년 제10차 포럼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주와 개발에 대한 전지구적 사회계약을 위하여(Towards a global social contract on migration and development)”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로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 내 주요 수용국인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에 최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2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5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수립하고

1) 이 글의 주요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신지원. 2013.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담론에 대한 재고찰”, 『국제·지역연구』 22권 4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이를 위한 첫 번째 추진과제로 ‘이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던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제이주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동 주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나 경험적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친화적 이주정책’이나 ‘개발계획에서의 이주주류화(mainstreaming of migration)’가 동아시아와 한국 간의 국제이주와 개발협력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이주와 개발에 대한 담론은 충분한 경험적 사례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환원론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신자유주의적 낙관론에 강하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이주와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지역적 맥락에서 이주노동과 사회적개발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가면서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이에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한다. 첫째, 이주와 개발에 대한 담론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주-개발의 연계성’이 과연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이주와 공동발전이란 기치 하에 송출국-유입국-이주당자사 모두에게 유리한 ‘삼중이득(triple win)’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순환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논의를 조명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내 이주의 흐름을 특징짓는 단기순환적 노동이주가 이와 같은 지극히 낙관적인 이주와 개발의 논의에 부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와 개발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대치되는 기존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인간개발 및 사회개발적 접근, 지역적·맥락적 접근 그리고 초국가적 접근을 제시한다.

2. 이주-개발의 연계성 담론의 변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재조명되고 있는 이주-개발의 연계성(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은 전혀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주-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개념화는 동시대 지배적인 개발 패러다임 및 경제 담론과 그 맥을 같이 해왔다.

(1) 1960년대: 이주와 개발-노동력의 이동과 송금

1960년대 이주와 개발에 대한 논의는 당시 개발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경제적 근대화(economic modernization) 개념이 반영되어 이주와 저개발국가의 경제개발이 선순환적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예: Lewis, 1954). 즉 저개발국의 잉여 노동력의 국제이동은 장기적으로 국가 간 노동력 수급과 임금의 평준화 및 소득수준의 균형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국제이주는 감소한다는 주장이다(Alder, 1981; Kindleberger, 1965; Penninx, 1092). 이러한 이주와 개발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낙관적 관점은 당시 노동력의 송출국과 유입국의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노동력 부족을 경험했던 유럽과 미국은 이주근로자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고²⁾, 한국, 터키, 인도 등의 저개발국들은 국가주도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자국민의 해외취업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했다.

(2) 1970년대~1980년대: 저개발과 이주-빈곤과 두뇌유출

1970년~1980년대는 개발경제학의 근대화 이론을 비판하는 종속이론과 세계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아 이주와 개발에 관한 비관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이주와 개발의 논의에서 ‘개발/발전(development)’이란 용어는 중심부에 의해 지배된 주변부의 구조적 상황을 의미하는 ‘종속(dependency)’이란 용어로 대체되었고 주변부 국가의 ‘저개발(underdevelopment)’은 불평등한 세계체계의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되었다(Castells, 1989; Portes and Walton, 1981; Sassen, 1988; 1991; Wallerstein, 1974). 다시 말하면, 선진국은 이주근로자의 유입으로 노동력을 공급받고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반면 저개발 송출국은 젊고 생산성 높은 노동력의 유출로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이주의 흐름이 지속되면서 국제노동분업이 고착화되

2) 예: 독일의 Gastarbeiter 정책(1950~1960년대), 미국의 Bracero program(1942~1964년)

고 중심부인 유입국과 주변부인 송출국 간의 개발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이주는 저개발국의 경제에 해로울 뿐 아니라 저개발의 직접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 이주로 인해 저개발국의 안정적인 소작농 사회가 파괴되고 농업 경제기반이 약화되어 이주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가나,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보건의로 인력의 유럽이나 북미로의 해외취업을 통한 ‘두뇌유출(brain drain)’ 문제는 이주와 저개발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Cheng and Yang, 1998; Koser and Salt, 1997; Mahroum, 2001; Raghuram, 2000; Zhao, Drew and Murray, 2000). 더불어 이주와 개발에 대한 낙관론자들이 주장한 송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저개발 국가 내에서 국제이주가 가능한 사회적 계층은 대개 극빈층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이미 보유한 계층이므로 이들이 해외취업을 통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저개발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송금은 또한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소득으로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주로 수입된) 소비재의 소비에 사용되며, 이는 결국 가계의 송금 의존성을 높인다.

(3) 2000년대: 이주와 공동발전 - 송금, 디아스포라, 순환이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의는 기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시 낙관적인 관점으로 회귀하며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제적 송금이나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지식의 이동과 사회적 송금을 통하여 국제이주가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주를 이룬다(Maimbo and Ratha, 2005). 개도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개발을 위한 새로운 ‘초국적 행위자(transnational agents)’로서 과거 국제이주를 통해 선진국에 정주한 이민자, 즉 디아스포라의 역할도 이주-개발의 연계성 논의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Aguinas and Newland, 2012; Faist, 2009). 특히 과거 저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두뇌유출’은 기존 해외로 유출된 인적자원의 기술 및 경험 향상과 이들의 귀환을 통한 개도국의 이득에 초점을 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으로 대치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인적자원의 국제이동이 다시 긍정적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다(Kuznetsov, 2006; Saxenian, 2002; 2005).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나 GFMD를 중심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정책입안자 사이에서 순환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확산되고 있다(GCIM, 2005; GFMD, 2007).

이주와 개발에 대한 이러한 낙관적 담론을 반영하듯 유럽의 주요 이주유입국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과 UN, IOM(국제이주기구), EU(유럽연합)은 이주를 통한 개발 정책(혹은 개발을 위한 이주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프랑스의 경우 이주와 ‘공동발전(co-développement)’이란 정책목표 하에 이주자의 주요 출신국인 말리, 세네갈, 모로코를 비롯한 북·서아프리카 지역의 개발을 공공정책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은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를 중심으로 이주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법무부를 주무부서로 관리와 통제 중심의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이주와 개발 정책은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IOM 및 EU와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전문직 디아스포라를 매개로 개도국으로의 지식전수사업을 시행해왔다.³⁾

국제기구와 원조공여국 및 개발협력단체들은 만성적인 저발전으로 시름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발전에 있어 디아스포라의 역할과 헌신을 높이 사고 있다. MIDA(Migration for Development in Africa)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변화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을 낙관론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유럽 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는 공동발전의 실천에 있어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으며 수용국과 고국에서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MIDA프로그램에서 강조되는 ‘공동발전’, ‘디아스포라 공동체’ 등의 핵심 용어들은 아프리카 저발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발전’을 위한 실천적 책임을 개인들과 공동체로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을 체현하고 있다(Faist, 2008; Mohan, 2008). 유럽의 원조공여국과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디아스포라와 고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공동발전 사업의 걸림돌로 구분한다. 즉 개발원조나 발전사업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공동발전 사업에 있어 이상적인 디아스포라의 유형은 공정성(impartiality)과 중립성

3) 예: 가나-네덜란드 이주와 개발 프로그램, MIDA(Migration for Development in Africa) Ghana Health Project

(neutrality)을 지키면서 결속(unity)하는 ‘비정치화(depolicitised)’된 공동체로 설정된다(Horst, 2013). 여기서 ‘공정성’은 원조가 종족, 젠더, 종교 혹은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전적으로 필요성에 근거해서 제공됨을 의미하며, ‘중립성’은 원조를 제공하거나 사업에 임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지역 내 무력분쟁이나 정치적 갈등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반한다. 물질적 원조와 경제적 발전에 초점을 둔 이러한 비정치화된 담론은 디아스포라를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기를 꺼린다(신지원, 2015).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정치적 문제나 무력분쟁이 난민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며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동부지역 출신 이민자의 대다수는 난민 신분으로 유럽에 정착하여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경우이다. 난민 디아스포라의 경우, 고국의 정치사회적 변혁이나 분쟁 후 사회의 안정화와 재건에 대한 입장과 활동이 고국과의 연대 형성 뿐 아니라 수용국 내 디아스포라 집단 간의 관계형성에도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주와 발전의 연계 담론에서 요구하는 디아스포라의 ‘비정치화(depolicitisation)’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난민 디아스포라에게는 딜레마와 도전이 될 수 있다(Ibid.).

캐슬즈(Castles, 2008)와 드 하스(de Hass, 2012)가 역설하듯, 송금, 디아스포라 그리고 순환이주에 초점을 둔 오늘날 이주와 개발의 선순환적 상호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앞서 살펴본 1960년대 근대화 이론에 근거한 개발의 낙수효과이론(trickle-down theory)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개도국의 개발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구조적 제약들, 이를테면 사회-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빠진 채 이주자 개인과 가계의 경제적 이득을 국가 개발과 연관 지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드 하스(De Hass, 2012)는 이주와 개발에 대한 이러한 ‘신 낙관론(neo-optimism)’이 개발 혹은 저개발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과 시장으로만 돌리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주-개발의 연계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3. 단기순환노동이주는 과연 개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단기순환이주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내 이주의 흐름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이주 유형이다. ‘정주’가 아닌 본국으로의 ‘귀환’을 원칙으로 하는 단기순환이주는 수용국과 송출국 모두의 입장에서 유리한 이주정책으로 여겨지며 오늘날 국제노동이주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수용국 입장에서는 ‘귀환’을 전제로 필요한 이주 인력을 적절한 기간 동안 꾸준히 공급받음으로써 이주자의 정주로 인해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및 복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동시에 송출국 입장에서는 해외근로자가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으로 인한 소비 활성화 및 인력자본의 영구적 유출 없이 만성적인 실업난 해소가 가능하며 귀환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이 국가발전의 잠재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대세를 반영하듯 오늘날 국제이주를 통해 이주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은 개도국의 ‘발전을 불러오는 만트라(the development mantra)’처럼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주당사자 입장에서도 순환이주의 확대는 곧 합법적인 노동이주의 기회 증가가 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순환이주는 송출국-유입국-이주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삼중이득(triple win)’ 해결책으로서 그려지며 현 ‘국제이주와 발전’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단기순환이주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내 이주의 흐름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이주 유형이다.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지속된 이주근로자의 유입으로 한국은 아시아 지역 내 이주의 흐름에 있어 단기순환이주의 주요 유입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인권침해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이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권익개선, 인력도입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의 성과를 보이며, 한국의 단기이주인력정책이 진일보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연 고용허가제가 의도하고 있는 단기순환 원칙에 따른 이주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고용허가제가 지나치게 사용자 측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자의 직장이동 조건과 횡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구직 절차상 제약이 많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재고용에 따른 귀환-재입국 제도가 시행되면서 재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권한 독점의 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중소기업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여전히 3D업종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숙련 단순 생산직에 집중되어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이주노동인력에 대한 의존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영세 기업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나 연구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의지 없이 이주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여 고용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는 임금상승 억제 효과를 가져와 해당 업종 내 임금수준을 하락시키고 한계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화를 심화시키고 산업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용만료 시점의 이주노동자가 귀환하지 않고 장기체류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며 이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오랜 정책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두고, 발리바르(Balibar, 2010: 290)는 “현대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력의 “불법” 유통을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억압하고” 있는 정책의 부조리한 양면성을 비판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본국보다 10배 이상 높은 한국의 임금수준, 귀환 후 한국으로의 재입국에 대한 위험부담, 오랜 이주생활 이후 본국에서의 재적응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귀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는 이주노동자 본인의 취약한 체류신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강권하기 마련이어서 정규이주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더 길고 임금수준은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 이주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순환이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적지 않다(Agunias and Newland, 2007; Skeldon, 2010). 먼저 순환이주정책의 성공여부는 ‘자발적 귀환’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발적 귀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단기 이주자의 경우 높은 귀환 비용이나 현재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본국에서의 취업이나 사업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귀환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쉽다. 이주자가 본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개인 혹은 구조적 여건상 귀환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국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이주의 순환성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과거 독일의 손님노동자(Gastarbeiter) 정책이나 미국의 브라세로(Bracer) 정책⁴⁾과 같은 선례에서 나

타난다. 단기순환이주정책의 만성적인 문제, 예를 들면 귀환하지 않은 계약만기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이주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제약 등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다수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환이주’가 이주관리정책, 특히 국제이주인력수급과 개발의 특효약(‘silver bullet’)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Skeldon, 2010). 이상적으로 순환이주를 통해 귀환한 이주자의 기술과 경험이 송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주자의 송금 또한 가계의 빈곤을 해결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주의 긍정적 개발 효과는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에서 가능한 것이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송출국의 구조적 제약은 이주자의 이주 및 귀환에 대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4. 이주-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

순환이주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디아스포라의 역할과 전문인력의 두뇌순환은 개도국의 개발에 긍정적 상호연관성을 가질 수 있고 일련의 경험적 증거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⁴⁾.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숙련 계약노동이 주를 이루는 순환이주 형태를 고려해 볼 때 순환이주-개발의 연계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않다. 개발에 대한 순환이주의 제한적 효과는 이주와 개발에 대한 맹목적 낙관론에서 벗어나 좀 더 균형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는 곧 이주와 개발의 상호연관성을 과연 비판론과 낙관론으로 대치되는 기존의 이분법적 논의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주를 통한 개발효과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송출국의 구조적

- 4) 1942년~1964년 시행된 멕시코인 계절 농장 인력 유입정책으로 약 4백만 명의 멕시코 단기계약근로자가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이 중 대다수의 근로자가 재계약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 정부가 멕시코 계약근로자와 계절노동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비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 이주근로자가 증가하였다. 이들 중 다수가 귀환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에 영주하게 되었고 가족을 초청했다(Newland, 2009).
- 5)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실리콘 벨리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 출신 전문기술인력의 기술전수 및 귀환이 인도의 IT 교육과 산업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거론된다. 실리콘 벨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도의 전문인력은 모국 내 교육투자(예: 인도공과대학 IIT)를 통해 기술인력 양성과 인도인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실리콘 벨리 기술인력의 30~40%가 인도 기술자이고,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난 10년간 매년 50% 이상의 급성장을 거듭한 데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IT 기술인력의 기여도가 크다(이순철·송영철, 2009).

상황이 열악한 경우, 즉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및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하고 사회 경제적, 권력의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지속가능하고 거시적인 개발에 대한 이주의 효과는 분명 한계를 가질 것이고 더 나아가 비관론자들의 주장처럼 개도국 사회 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이주를 재생산해내며 이주와 저개발의 악순환 구조를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시적 차원에서 소득 수준의 향상 및 가계 수입 보전의 안정장치 그리고 이주당사자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적 자원 증가 등 이주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저평가 하기는 어렵다. 이는 곧 경제적 개발에 초점을 둔 기존의 이주-개발 담론의 한계에 대한 재고와 이주-개발의 연계성을 좀 더 맥락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절에서는 이주-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에 대하여 논의한다.

(1) 인간개발 및 사회개발적 접근

‘개발’의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기존 이주-개발의 연계성 논의가 경제적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주와 연관된 다양한 측면의 개발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de Haas, 2012; Piper, 208; 2009). 특히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은 개인의 자발적 국제이주에서 중요한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인간개발은 기존에 경제 성장이나 소득지표로 측정되는 경제적 발전에 중점을 두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 과정과 기회의 확대를 포함한 개념이다. 인간개발을 추구한다는 것은 경제적 소득 뿐 아니라 개인의 기회와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면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위험에 대한 취약성 감소 및 정치적 참여의 증대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과정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인의 자발적 이주는 인간개발의 한 과정임과 동시에 이는 이주를 통한 인간개발적 효과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인간개발’이란 개념을 처음 확립한 마뉘 올 하크(Haq, 1995: 14)는 소득과 경제성장 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개발의 개념이 국가적 차원의 개발과는 달리 인간개발은 개인이 역량을 발휘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

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개발을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단지 그 일부일 뿐이며 양적인 성장만큼 질적인 성장 또한 중요함을 역설한다. 센(Sen)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역할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왜 애초부터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신 개발의 의미를 개인이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인간적 자유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경제성장이 이러한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개발의 과정을 인간의 역량확대를 통해 더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en, 1997). 경제적 번영이 자유롭고 충족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듯이, 교육, 의료 서비스, 질병의 치료 등 사회적 개발과 관련된 요소들 또한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는 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생산성 증대 및 경제 성장, 개인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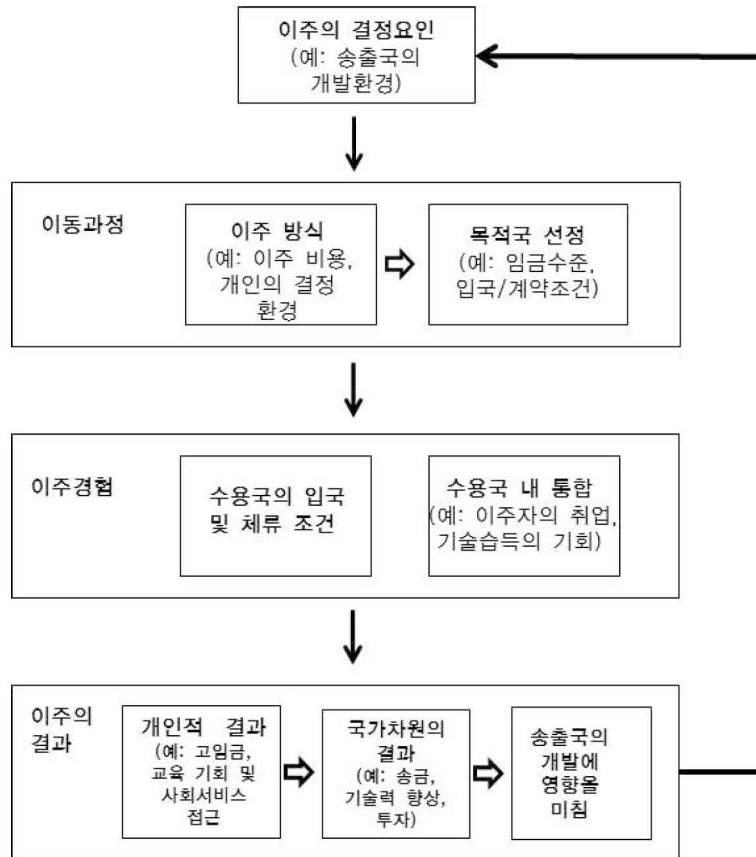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중요성은 젠더와 이주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Dannecker, 2009; Piper, 2008; 2009; Rahman, 2009; Scalabrini Migration Center et al., 1999; Toyota et al., 2007). ‘사회적’이라 함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은 포괄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주의 사회개발적 측면은 이주자의 사회적, 인적 자본의 확대, 이주와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의 연관성, 사회적 송금, 정치적 참여와 민주화 등과 연관되어 있다(Piper, 2009). 이주는 송출국 사회의 젠더 역할 및 관계 혹은 남겨진 가족의 유형 및 가족 간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는 다시 이주에 대한 결정과 유형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주를 통한 가족해체 등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는 공동체내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예를 들어 총인구의 약10%가 해외에서 취업중인 필리핀의 경우 장기해외취업 후 귀환한 이주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보건 및 연금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정책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제이주에 대한 인간개발 및 사회개발적 접근은 단기순환이주를 단순히 유입국의 노동시장 내 인력난 해소나 송금을 통한 송출국의 외화수입원이 아닌 이주당사자의 역량강화의 기회 및 개발도상국 내 지역공동체와 사회 전반의 문제와도 연관 지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곧 유입국의 개발친화

적 이민정책이나 국제개발협력정책 그리고 송출국의 국가발전정책 등 이주와 개발 관련 정책의 방향성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지역적·맥락적 접근

이주는 전 과정에 걸쳐 개발과 직·간접적 연관을 가진다. 아래 <그림 1>은 이주의



<그림 1> 이주와 개발의 순환적 연관성

자료: Chappell & Glennie(2009: 6)

결정단계에서부터 이주의 경험 및 귀환 후에 걸쳐 이주와 개발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접근방식을 도식화한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이주는 개별이주자의 이주비용 및 사회적 연결망 등의 미시적인 요인과 더불어 송출국의 개발 환경(예: 실업, 저임금, 빈곤, 환경 재난, 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 그림은 또한 이주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직간접적 개발이

또 다른 이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이주-개발-이주의 순환적 연관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주와 개발의 과정은 이주의 단계에 따라 시간을 두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이주의 각 단계에서 이주와 개발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주의 개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이주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주의 지역적, 맥락적 접근은 특히 국제이주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력을 활용하는 유입국의 고용허가제와 같은 정책에서 필히 요구된다. 유입국은 이주근로자가 수용국 내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근로자의 권리, 적용되는 사회 지원, 수용국의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업종별 안전교육과 보건교육 및 언어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주근로자가 체류기간 중 습득한 경험과 기술이 본국의 발전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귀환준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주근로자의 교육이 송출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적 접근 및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 이주자가 본국에서 습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기술 혹은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 본국의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 이주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이주자가 귀환 후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본국에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고용허가제의 운영에 있어 이주근로자 출신국가의 현지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내용으로 귀환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귀국지원 사업의 재시행 방안이 필요하다. 귀환지원교육의 내용을 보다 체계화시켜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근로자들이 이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귀환 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주근로자 대상의 교육내용에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어떻게 장기적 자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포함하는 일종의 '재정관리능력향상교육(financial literacy training)'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교육은 이주근로자가 한국 내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

획을 세우고 자신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금전적 소득의 지출 및 관리교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3) 초국가적 접근

앞서 살펴본 이주와 개발의 연관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는 접근 방식은 기존에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등 국내적 관점에서만 다루었던 이민정책을 이주 당사자, 이주 가정, 지역 사회 및 송출국 차원에서 이주정책과 개발의 연관성을 모색하며 논의의 지평을 초국가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초국가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이주라는 특정 현상을 송출국-유입국의 전반적 역학관계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단순한 개별 현상이 아닌 송출국 내 복합적인 개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이주와 개발과 관련된 영역에서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송출국-유입국-이주당사자의 입장에서 모두 고려할 때 순환노동이주의 성공여부는 ‘자발적 귀환’과 원활한 ‘재입국·재취업’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이주의 전 과정에 걸쳐 각 단계마다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초국적 협력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 아래 <표 2>는 오늘날 노동이주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는 정책과 이주와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의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표 2> 이주과정의 단계별 이주-개발을 위한 과제 예시

| 이주과정의 단계 | 관련 정책 | 이주-개발을 위한 과제 |
|----------------------------|--|--|
| 이동 과정 (출발 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출국의 노동이주 정책(예: 필리핀의 경우, 노동이주 등록 및 출발 전 세미나 참여) • 한국의 고용허가제(인력모집, 한국어 능력시험, 출발 전 교육) • 재고용 시 재입국 절차 간소화 → 이주의 순환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모집 시, 이주자의 기술 및 경험과 한국 내 일자리의 매칭 • 한국 내 취업활동과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 이주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재정관리능력 향상교육 |
| 이주 경험 (유입국 내 취업활동 및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 이주근로자를 위한 통합 정책 • 송금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근로자의 통합 지원 • 작업장 내 이주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

| | | |
|---------------------|---|--|
| | | 역할 강화 • 이주근로자의 역량강화 • 기술향상과 재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 증대 |
| 이주 결과 (귀환 및 재통합) | • 귀국지원 프로그램(예: 고용허가제 해피리턴 프로그램) • 재통합지원(예: 필리핀의 재통합지원센터-NARCO) • 디아스포라 정책 | • 귀환 후 활용이 가능한 기술 습득 교육 • 귀국지원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이주당사자와 가족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한 귀환 및 재통합 교육 • 재통합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한국에서 최근까지 시행해왔던 귀국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귀환 및 재통합을 이주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귀환과 본국 재통합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지에 남겨진 가족과 나아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귀환자의 재통합이 이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귀환자의 가족과 더 나아가 이들을 둘러싼 사회구조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들의 본국 재통합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재정관리능력 향상교육에 있어서도 초국가적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이주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유입국에서 실시됨과 동시에 본국에 남겨진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지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 즉 유입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이주근로자가 수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송금하고 저축할 것인지 교육을 받고, 본국에 남겨진 가족들은 이주근로자가 보내온 송금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출하고 투자할 것인지 계획하는 교육을 동시에 받음으로써 초국가적 가족 단위에서 송금을 통한 소득을 관리하고 귀환 후 미래를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방안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송출국 현지에 남은 이주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NGO나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이 요구된다. NGO는 지역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송출국 내 지방정부 및 지역 사회에 남겨진 이주자 가족에게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프로젝트 기획 능력이나 정보 조직화 기술, 인적·물적 자원 등은 취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의 주요 송출국으로서 국민의 10%가 해외취업 중인 필

리핀에서는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다수의 NGO들이 활동하고 있다. 1996년 설립된 ‘운라드 카바얀(Unlad Kabayan)’은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안투자운동(Migrant Savings for Alternative Investment: MSAI)’을 전개하고 있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이주근로자 지원 NGO이다.⁶⁾ ‘대안투자운동’은 귀환 이주근로자가 본국에서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실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주근로자가 현지 수입을 지속적으로 저축함으로써 미래자산을 확보하고, 이 자본을 본국에 투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초국적 운동이다. 귀환 이주근로자의 ‘지역’ 재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운라드 카바얀은 필리핀 국내외의 다양한 행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기관(Local Government Units: LGU)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신지원 외, 2012).

이러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출국 현지 NGO는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정적 한계로 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⁷⁾ 이러한 취약점은 현지 진출한 국제기구와의 협업이나 유입국의 대송출국 공적원조(ODA)를 통해 보완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입국의 입장에서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일환으로서 송출국 현지 NGO 지원을 통해 귀환 이주자의 재통합을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⁸⁾

6) Unlad Kabayn 이외에 ATIKHA 등 필리핀 국내 여러 NGO가 귀환이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대안투자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7) 운라드 카바얀의 경우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유엔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등 UN 산하기구들의 지원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귀환이주자들의 창업을 위한 상품개발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겪고 있다.

8) 여기서 지원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술전수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NGO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나가며

이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재조명받고 있는 ‘이주-개발의 연계성’을 둘러싼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주-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개념화는 동시대 지배적인 개발 패러다임 및 경제 담론과 그 맥을 같이 해오며, ‘두뇌 유출’, ‘저개발’에 초점을 둔 이주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한 1970년~1980년대의 비관론적 관점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뇌 유입/순환’,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역할’을 강조한 관점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드 하스(de Haas, 2012)가 비유하듯 이러한 이주-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담론은 시계의 추(pendulum)처럼 비관적-낙관적 관점을 오고가며 시대별로 되풀이되어왔다. 그러나 저숙련 계약노동이 주를 이루는 순환이주 형태를 고려해 볼 때 순환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은 오늘날 지배적인 신낙관론적 담론에 그리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주의 순환성이 제약되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이주자의 노동권, 가족결합권 및 사회권 등의 제약은 순환노동이주의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개발에 대한 순환이주의 제한적 효과는 이주와 개발에 대한 맹목적 낙관론에서 벗어나 좀 더 균형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는 곧 이주와 개발의 상호연관성을 과연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대치되는 기존의 이분법적 논의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본문에서 이주-개발의 연계성 담론에서 기존에 강조되어왔던 경제적 발전을 넘어서서 삶의 질과 기회에 중점을 둔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적 관점으로 ‘개발’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개발을 추구한다는 것은 경제적 소득 뿐 아니라 개인의 기회와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므로 이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이주는 개인과 가계의 소득증대 뿐 아니라 ‘개인이 선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개발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주근로자의 해외취업, 귀환 및 재통합을 이주근로자 개인만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본국에 남겨진 가족과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및 더 나아가 송출국의 사회정책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개발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내 이주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단기순환적 노동이주를 통하여 이주의 잠재적 개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주를 단

순히 인력수급정책으로만 보지 않고 송출국-유입국-이주당사자 모두의 상호이익을 고려하는 초국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기존 송출국이나 유입국의 입장에서 이주정책을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개발을 지향하는 정책으로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개발이나 저개발은 이주자 개인의 책임 소지가 될 수 없으며, 이주는 개발의 특효약이 될 수 없다. 결국 이주와 개발의 논의는 글로벌 권력과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결국 이주-개발의 연계성에 얽매인 논의에서 벗어나, 이주자의 권리에 바탕을 둔 이민정책과 이주가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발정책이 각각의 영역에서 실현됨으로서 개발 과정에 있어 이주의 긍정적 역할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참고문헌

- 발리바르, 에티엔. 진태원 역. 2010. 『우리,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 법무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5월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설동훈. 2007.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
한국·독일·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7권 2호. pp.
369~419.
- 신지원 외. 2012. 『이주근로자의 적응과 효과적 귀환을 위한 통합정책:
인력개발교육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1-040)』. 고양: IOM이민정책연구원.
- 신지원. 2015. 「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 담론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디아스포라연구』9권 2호. pp. 7~36.
- 이순철·송영철. 2009.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 산업 성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기선 외. 2011. 『201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정책의제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 Adler, Stephen. 1981. A Turkish Conundrum: Emigration, Politics and

Development, 1961~1980.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gunias, Dovelyn Rannveig and Newland, Kathleen. 2007. "Circular Migration and Development: Trends, Policy Routes and Ways Forward." *MPI Policy Brief* . April 2007.
http://www.migrationpolicy.org/pubs/MigDevPB_041807.pdf
(accessed on 1 June, 2013)

-
- _____. 2012. *Developing a Road Map for Engaging Diasporas in Development*. IOM & MPI: Geneva.
- Bhalla, Ajit and Lapeyre, Frederic. 1997. "Social exclusion: Towards an analytical and operational framework." *Development and Change*, 28: 413-433.
- Bowring, Finn 2000. "Social exclusion: limitations of the debate." *Critical Social Policy*, 20(3): 307-330.
- Böhning, W. R. and de Beijl, Roger Zegers 1995, "The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Labour Market: Policies and Their Impact." *International Migration Papers*, No. 8. ILO: Geneva.
- Brønden, Birgitte Mossin. 2012. "Migration and Development: The Flavour of the 2000s." *International Migration*, 50(3): 2~7.
- Byrne, David. 1999. *Social Exclus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New York: Basil Blackwell.
- Castles, Stephen. 2008. "Development and Migration - Migration and Development: What comes first?" *SSRC Migration & Development Conference Paper No. 2*.
- Cheng, Lucie. and Yang, Philip. Q. 1998. "Global interaction, global inequality, and migration of the highly trained to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 626~94.
- Chappell, Laura. and Glennie, Alex. 2009. *Maximising the Development Outcomes of Migration: A Policy perspective*. London: Global Development Network and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Dannecker, Petra. 2009. "Migrant visions of development: a gendered

- approach." *Population, Space and Place*, 15: 119~132.
- de Haas, Hein. 2012. "The Migration and Development Pendulum: A Critical View on Research and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50(3): 8~25.
- Faist, Thomas. "Migrants as Transnational Development Agents: An Inquiry into the Newest Round of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Population Space and Place*, Vol. 14 (2008), pp. 21~42.
- Faist, Thomas. 2009. "Transnationalization and Development: Toward an Alternative Agenda." *Social Analysis*, 53(3): 38~59.
- GCIM(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2005. *Migration in an Interconnected World: New Directions for Action*. Geneva: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 GFMD. 2007. "Roundtable Themes Concept Paper."
<http://www.gfmd.org/en/docs/brussels-2007> (accessed on 25 May, 2013)
- Haq, Mahbub ul 1995. *Reflections on Huma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rst, Cindy. "The Depoliticisation of Diasporas from the Horn of Africa: From Refugees to Transnational Aid Workers." *African Studies*, Vol. 72. No. 2 (2013), pp. 228~245.
- ILO. 2004. "Report of the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92/pdf/pr-22.pdf> (accessed on 25 May, 2013)
- _____. 2006. *ILO Multilateral Framework on Labour Migration-Non-binding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right-based approach to labour migration*. Geneva: ILO.
- _____. 2009. *Rays of Hope: Emerging Good Practices in the Provision of Economic and social Reintegration Programs for Victims/Survivors of Trafficking*. Geneva: ILO.
- IOM. 2008.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No. 11-Migrants and the Host Society: Partnerships for Success*. Geneva: IOM
- _____. 2011. "Policy Change."
<http://www.iom.int/jahia/Jahia/about-migration/managing-migration/integration-of-migrants/policy-challenges> (accessed on 25 May, 2013)

- Kindleberger, Charles. P. 1965. *Europe's Postwar Growth: The Role of Labor Suppl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oser, Khalid. and Salt, John. 1997. "The geography of highly skille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 283~303.
- Kuznetsov, Yevgeny. (ed). 2006. *Diaspora Networks and International Migration of Skills: How Countries Can Draw on their Talent Abroad*. Washington, DC: WBI Development Studies.
- Lewis, Arthur. W. 1954.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Unwin.
- Madanipour, Ali. et al. 1998. *Social exclusion in European cities : Processes, Experiences and Responses*. London: Stationery Office,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 Mahroum, Sami. 2001. "Europe and the immigration of highly skilled labour." *International Migration*, 39(5): 27~43.
- Maimbo, Samuel Munzele. and Ratha, Dilip (eds.) 2005. *Remittances: Development Impact and Future Prosp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 Mohan, Giles. "Making Neoliberal States of Development: The Ghanaian Diaspora and the Politics of Home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26 (2008), pp. 464~479.
- Newland, Kathleen. 2009 *Circular Migration and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Research Paper 2009/42*. New York: UNDP.
- O'Neil, Kevin. 2003. *Using Remittances and Circular Migration to Drive Development* . Washington, DC: MPI.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feature/display.cfm?ID=133>
 (accessed on 25 May, 2013)
- Penninx, Rinus. 1982. "A Critical review of theory and practice: the case of Turke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6(4): 781~818.
- Piper, Nicola. 2008. "Feminisation of Migration and the Social Dimensions of Development: the Asian case." *Third World Quarterly*, 29(7): 1287~1303.
- _____. 2009. "The Complex Interconnections of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a Social Perspective." *Population*,

- Space and Place, 15: 93~101.
- Portes, Alejandro. and Walton, John. 1981. Labor, Clas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 Raghuram, Parvati. 2000. "Gendering skilled migratory streams: implications for conceptualisations of migration."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9(4): 429~57.
- Rahman, Md Mizanur. 2009. "Temporary migration and changing family dynamics: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Population, Space and Place, 15: 159~172.
- Sanchez, Pablo. 2010. *Migration and Integration at the EU Level: A Right-based Perspective*.
http://www.socialwatch.eu/wcm/migration_a_rights_based_perspective.html (accessed on 1 June, 2013)
- Sassen, Saskia.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and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xenian, AnnaLee. 2002. "Brain Circulation: How High Skilled Immigration Makes Everyone Better off." The Brookings Review, 20(1): 28-31.
- _____. 2005. "From Brain Drain to Brain Circulation: Transnational Communities and Regional Upgrading in India and China."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Fall: 35-61.
- Scalabrini Migration Center, et al. 2004. Hearts Apart. Quezon City: Scalabrini Migration Center.
- Sen, Amartya. 1997. "Editorial: Human Capital and Human Capability." World Development, 25(12): 1959~1961.
- _____. 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Manila: Office of Environment and Social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Bank.
- Skeldon, Ronald. 2010. *Managing Migration for Development: Is circular migration the answer?*
<http://www.migration4development.org/content/managing-migration>

- development-circular-migration-answer) (accessed on 1 June, 2013)
- Smith, Michael Peter. and Guarnizo, Luis Eduardo. (eds.)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London: Transaction Press.
- Toyota, Mika., et al. 2007. "Editorial introduction: Bringing the 'left-behind' back into view in Asia: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migration-left behind nexu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3: 157~161.
-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 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 Zhao, John, Drew, Doug and Murray, Scott. 2000. "Brain drain and brain gain: the migration of knowledge workers." *Education Quarterly Review*, 6(3): 8~35.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주제발표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과제
: 송출국과의 협력 및 이민자의 역량 활용

조영희 연구위원

(IOM이민정책연구원)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과제 : 송출국과의 협력 및 이민자의 역량 활용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2017. 05. 19(금)

조영희 (yh.cho@iom-mrtc.org)



IOM 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목 차

- I 이민과 개발 관련 글로벌 논의 현황
- II 이민정책과 호혜적 개발의 관계
- III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향후 과제:
송출국과의 협력 및 이민자의 역량 활용



IOM 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I 이민과 개발 관련 글로벌 논의 현황

i. 이민과 개발 관련 글로벌 논의 현황

이민과 개발에 관한 주류 관점: 시기별 변화

| 시기 | 이론적 관점 | 정책적 관점 |
|------------------|--------|--|
| 2차 세계대전 이후~ 1973 | 낙관론 | 이주자의 본국 귀환은 지식과 자본의 전달이라고 봄 |
| 1973~1990 | 비관론 | 개도국의 두뇌유출에 대한 우려(정책적 회의감) |
| 1990~2001 | 수렴론 | 이주-개발 연계 정책에 대한 무관심 지속 |
| 2001~현재 | 낙관론 | 송금, 두뇌확보(순환), 이민자의 초국적 연계에 대한 정책 관심 급증 |

특히 2000년대 이래, 국제이주와 국제개발 두 분야에서의 중요한 변화에 따라 이민과 개발 간 긍정적 상호연관성이 강조되며 “이민을 통한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논의가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함

i. 이민과 개발 관련 글로벌 논의 현황

이민을 통한 개발효과 모색 논의 활발
(2000년대)

국제이주 분야의 변화

- 이주 규모의 확대
- 이주 유형의 다양화
- 이주 영향의 심화



국제개발 분야의 변화

- MDGs 체제에서 SDGs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인간, 사회, 경제, 환경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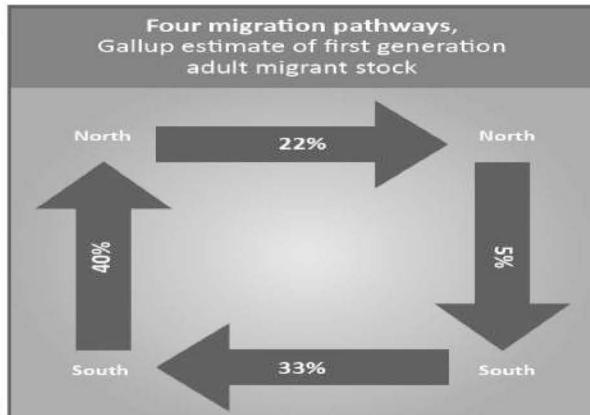
→ 이민과 개발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

- 1) GFMD: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 2) JMDI: EC-UN Joint Migr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
- 3) KNOMAD: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 4) IOM as UN Migration Agency(2015.9)

i. 이민과 개발 관련 글로벌 논의 현황

국제이주 분야의 변화

- 1) 이주의 규모: 2013년 기준, 이주자 규모는 2억3천2백만 명으로 이미 전 세계 인구의 3.2%(OECD), 2050년 4억 5백만 명 예상
- 2) 이주의 유형: 노동이주, 가족이주, 유학이주, 난민, 기업이주 등
- 3) 이주의 영향: 전 세계 이민자의 출신국, 경유국, 유입국으로 확장



Source: Gallup World Poll, 2009-2011.

i. 이민과 개발 관련 글로벌 논의 현황

국제개발 분야의 변화: 개발 목표 내에서 이민 쟁점의 위치

MDGs

| | |
|---|---|
|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4 REDUCE CHILD MORTALITY |
| 5 IMPROVE MATERNAL HEALTH |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8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 | | | | |
|--------------------------------------|--|--|--|--|--|
| 1 NO POVERTY | 2 ZERO HUNGER |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4 QUALITY EDUCATION | 5 GENDER EQUALITY |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
|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10 REDUCED INEQUALITIES |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 13 CLIMATE ACTION | 14 LIFE BELOW WATER | 15 LIFE ON LAND |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II 이민정책과 호혜적 개발의 관계

II. 이민정책과 호혜적 개발의 관계

이민을 통한 개발의 '다차원성'

- 이민자 : 경제적 이익, 복지혜택, 지식 및 기술 습득
- 이민자의 가정: 송금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 보건 및 교육 서비스로의 접근성 확대
- 송출국: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서의 송금, 지식 및 기술 전수, 빈곤감소, 인간개발
- 지역(local) 사회: 지역 내 기간시설 개선, 투자 활성화, 디아스포라(diaspora) 네트워크의 형성 및 교류(예: 재외 향우회)
- 수용국: 노동력 부족 완화, 소비증대, 사회통합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 확장
- 지역(region): 국가 간 문화·정치적 교류 확대, 지역 수준의 이민거버넌스 형성

II. 이민정책과 호혜적 개발의 관계

'개발친화적 (development-friendly)' 이민정책

○ 개념: 이주의 결정단계, 과정, 경험 및 귀환과 재통합이라는 이주의 전 단계가 개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을 내포함

○ 측정 지표(OECD 기준)

1) 정치적 공약 및 정책관련

- 정부가 이민 정책의 개발영향을 고려할 것이라는 공약을 세우고 있는가?

2)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 이민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간의 조정과 정책조정을 위한 공식적 메커니즘이 설치되어 있는가?

3) 모니터링, 분석과 보고체계

- 이민과 개발과의 관계와 관련한 사안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유 여부와 국내외적으로 시민사회 전문가와 연구기관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II. 이민정책과 호혜적 개발의 관계

한국: 이민과 개발의 연계에 관한 정책 논의가 본격 시작 (2012~2013)

이민정책 분야의 변화

○ 이민과 개발에 관한 관점을 이민정책에 도입
(제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개발정책 분야의 변화

○ 비원조정책과 원조정책 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이행 분야로 이민정책을 주목
(OECD/DAC 가입 후 동료평가 계기)

II. 이민정책과 호혜적 개발의 관계

한국 이민정책 분야의 변화

이민정책의 새로운 목표로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정책 추진 방향>

“우리 나라는 원조를 받던 최빈 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로서, 우리 정책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동번영’ 할 수 있는 이민정책 영역을 발굴하고 연계할 필요”

○ 귀환 이민자의 성공적 본국 재정착 지원체계 구축(고용부, 법무부)

-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유도
- 고용허가제 만기도래자 귀국에 대한 송출국 책임강화

○ 개발도상국 우수인재 양성 지원

- 특화된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연계(법무부, 외교부)
- 개도국 우수인재 초청연수 및 교육지원(외교부, 교과부)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단계적 개발(외교부, 법무부)
- 이민과 개발관련 범 정부적 연구실시(외교부, 법무부)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향후 과제: 송출국과의 협력 및 이민자의 역량 활용

III.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향후 과제

송출국과의 협력: 네덜란드 사례

○ 가나-네덜란드 이주개발 프로그램

- 네덜란드와 개도국의 협력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가나출신 이민자들이 네덜란드에서 배운 지식을 가나의 중소기업에 전수하여 가나 발전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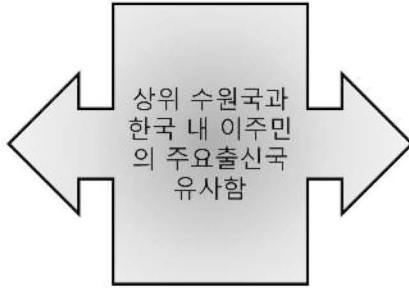
○ MIDA 가나 의료프로젝트

- IOM 헤이그가 주관하고, 가나보건부, 유럽 내 가나 이민자단체들이 협력하여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가나출신 의료진이 일정기간 동안 가나에서 의료 기술을 전수

III.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향후 과제

송출국과의 협력: 국내 주요 이민자의 출신국 대상 한국 ODA 사업에 이민쟁점 연계

| 순위 | 중점 수원국 |
|----|--------|
| 1 | 베트남 |
| 2 | 방글라데시 |
| 3 | 캄보디아 |
| 4 | 스리랑카 |
| 5 | 필리핀 |
| 6 | 라오스 |
| 7 | 몽골 |
| 8 | 인도네시아 |
| 9 | 요르단 |
| 10 | 아프가니스탄 |



| 순위 | 주요 송출국 |
|----|-----------|
| 1 | 중국(한국계포함) |
| 2 | 미국 |
| 3 | 베트남 |
| 4 | 일본 |
| 5 | 필리핀 |
| 6 | 태국 |
| 7 | 인도네시아 |
| 8 | 우즈베키스탄 |
| 9 | 몽골 |
| 10 | 타이완 |
| 11 | 캐나다 |
| 12 | 스리랑카 |
| 13 | 캄보디아 |
| 14 | 방글라데시 |
| 15 | 네팔 |

III.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향후 과제

이민자의 역량 활용: 유형

○ 정부 정책의 '협조자'로서 이민자 활용

-송출국 현지 사정과 정보에 밝은 이민자를 정부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예: 스위스 정부의 코소보 출신 이민자 활용)

○ 개발 실행의 '주체'로서 이민자 활용

-이민자가 주도적으로 개발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조직하는 경우 정부가 이민자들의 활동이 원활하도록 환경을 촉진하거나 실질적 재원을 지원함 (예: 캐나다 국제개발청이 이민자 단체의 개발프로젝트 지원)

III.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향후 과제

이민자의 역량 활용: 정책적 적용 방법

- 전문지식 및 전문 기술을 가진 이민자가 일시적으로 본국에 귀환하여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방법
- 송출국의 발전과 한국 내 이민자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이민자와 이민자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 단기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과 본국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이민자의 역량을 접목, 활용하는 방법

III.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향후 과제

이민자의 역량 활용 사례: 아세안 출신 이민자의 본국 사회발전 기여

유학생



- 한국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기술을 본국에 전수

결혼이민자



- 본국의 미취학 아동 대상 예체능 교육 봉사
- 한국 이주 경험 필리핀 귀환 여성이민자(결혼이민자와 예술홍행분야 종사자)와 그 자녀의 본국 재통합 지원
- 본국과 한국 간 노동문화 차이 이해를 바탕으로 E-9 근로자 출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 발전방안 제시
- 본국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경제와 창업의식 고취

이주노동자



- 자발적 귀환과 본국에서의 재통합 지원

III.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향후 과제

이민자의 역량 활용 사례: 아세안 출신 이민자의 본국 사회발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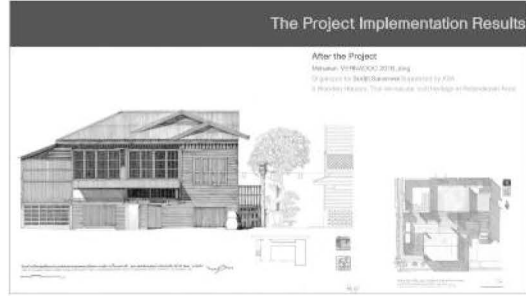
III.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향후 과제

이민자의 역량 활용 사례: 아세안 출신 이민자의 본국 사회발전 기여



III.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향후 과제

이민자의 역량 활용 사례: 아세안 출신 이민자의 본국 사회발전 기여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주제발표

한국적 상황에서의 이주를 매개로 한
호혜적 개발의 모색

이정환 교수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목 차

I. 이주노동의 현황

II. 이주노동의 호혜성

III. 이주노동의 호혜성 증진 방안

I. 이주노동의 현황

1. 이주노동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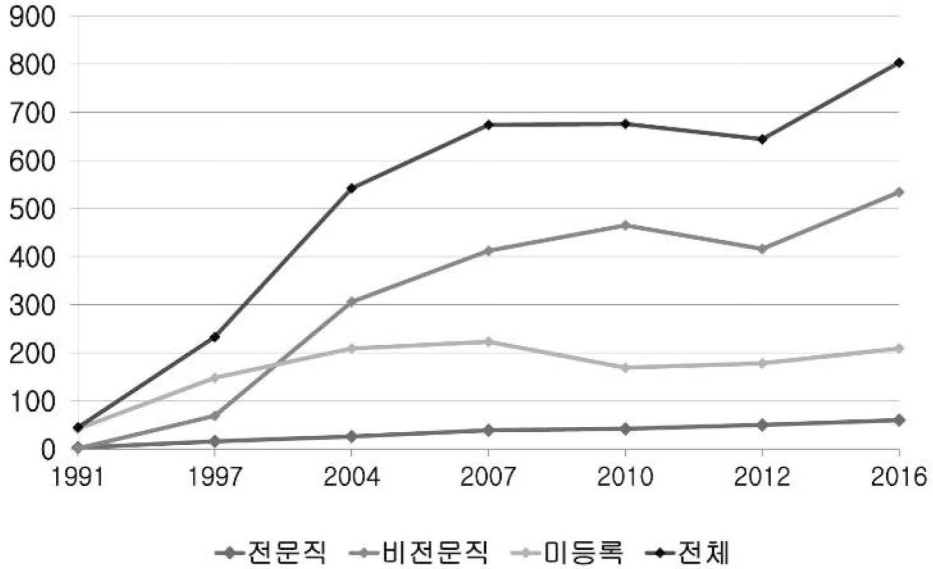
1) 이주노동자 유입의 배경

- 1980년대말 노동력 부족의 심화: 1980년대에 걸친 급격한 경제성장(연평균 9.4%), 학력증가에 따른 젊은층의 3D업종 기피현상 확산, 임금 증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 산업의 인력부족 (1987: 3.29%, 1991: 5.48%)
- 1988 올림픽 개최에 따른 입국규제 완화 및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
-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중국 조선족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
-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 및 고용 발생

2) 이주노동자의 증가

- 중국 조선족에 이어 국제이주 경험이 많은 필리핀인,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 네팔인 유입
- 1991년 산업연수생제 실시(해외투자업체연수제: 해외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한정)
- 1994년 외국인산업연수생제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 외국인노동자의 급증

〈표1: 이주노동자 수(단위: 1,000명)〉



3)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변화

- 산업연수생제(산업연수 D-3비자)
 - 1991년: 연수생신분 1년 체류
 - 1993년: 연수생신분 2년 체류
 - 1996년: 연수생신분 3년 체류
 - 1998년: 연수생신분 2년+근로자신분 1년 체류
 - 2002년: 연수생신분 1년+근로자신분 2년 체류
 - 문제점: 실제는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신분상으로는 연수생으로 대우(저임금, 임금체불, 불법체류, 노동기본권 무시, 인권침해, 고송출비용)
-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E-9비자)
 - 의미: 외국인력을 한국인과 거의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가진 근로자 신분으로 도입
 - 2004년: 도입, 3년 체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 2007년: 전면 실시, 산업연수생제 폐지, 3년 체류후 1개월 본국 귀환후 3년 체류
 - 2009년: 3년+1년10개월 체류
 - 2012년: 4년10개월 체류후 3개월 본국 귀환후 4년10개월 체류(성실근로자제입국취업특례제)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15개국):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파키스탄,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몽골, 라오스(신규예정)

-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 H-2비자)

- 2002년: 취업관리제 도입(방문동거 F-1-4비자, 1+1년, 40세이상, 국내 8촌이상 혈연)
- 2003년: 30세이상
- 2004년: 취업허용업종에 건설업 추가, 25세이상, 취업관리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특례 제에 흡수하여 운영
- 2007년: 방문취업제(H-2비자) 실시: 특례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무제한, 3년+1년10개월

4) 이주노동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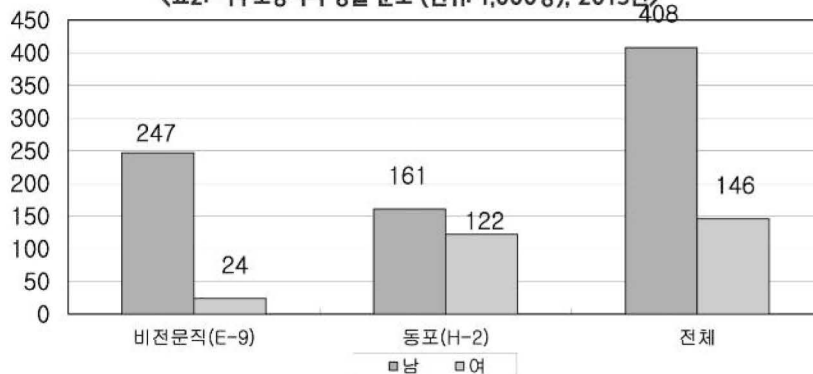
- 성별

- 비전문직 외국인: 남자(91.1%) : 여자(8.9%)
- 외국국적 동포: 남자(56.9%) : 여자(43.1%)
- 전체: 남자(73.6%) : 여자(26.4%)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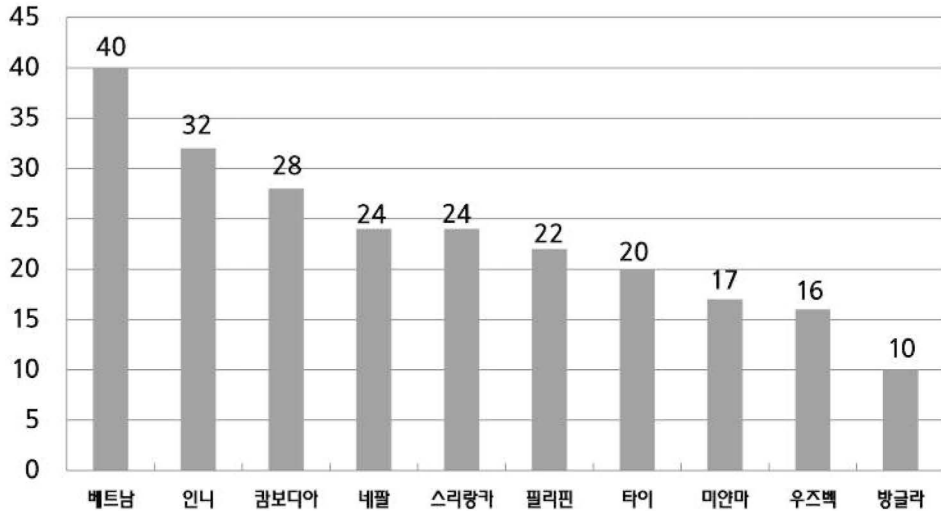
- 비전문직 외국인: 20대(57.6%), 30대(37.7%)
- 외국국적 동포: 20대(14.2%), 30대(28.6%), 40대(32.3%), 50대이상(24.9%)

<표2: 이주노동자의 성별 분포 (단위: 1,000명), 2015년>



- 국적: 동남아 개발도상국 출신 다수

〈표3: 국적별 비전문직 외국인력(단위: 1,000명), 2015년〉



II. 이주노동의 호혜성

1. 도입국의 효과

-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력부족 해소: 외국인력 고용업체 중 인력부족 경험업체 비율 (72%) (2013년)
 - 외국인력 고용 이유: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69.1%),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12.6%), 임금이 싸기 때문에(10.0%) (2013년)
- 생산유발효과
 - 외국인취업자의 노동투입에 의한 효과: 생산유발효과 20.9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9조원 (2012년)
 - 외국인취업자의 소비지출에 의한 효과: 생산유발효과 8.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6조원 (2012년)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외국인근로자의 평가: 한국인근로자에 도움(4.25/5), 한국경제에 도움(4.42/5) (2010년)
 - 고용업체의 평가: 외국인력도입에 따른 도움(3.93/5) (2010년)
-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변화: 좋아졌다(54.1%) : 나빠졌다(14.0%) (2013년)

2. 송출국의 효과

- 송금
 - 전체 송금액: 국내-100억달러 (2010년), 전세계-5400억달러(World Bank, 2016)
 - 외국인근로자 1인 월평균 송금액: 107만원(임금의 69.0%) (2013년)
 - 용도: 가족생활비(73.3%), 저축(44.8%), 재무상환(34.6%), 주택구입(30.3%), 교육비(25.9%), 사업투자(15.3%)
 - 외국인근로자 1인 월평균 저축액: 54만원(임금의 34.8%) (2013년)
-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적 기회 제공
 - 귀국후 계획: 내 사업을 해보고 싶음(42.5%), 가능하다면 잠시 쉬 다음 한국으로 와서 다시 일하고 싶음(22.9%), 가능하다면 고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체에 취업하고 싶음(6.5%) (2013년)
 - 귀국대비 취업교육 의향: 한국어교육(55.6%), 창업교육(40.0%), 컴퓨터관련직종(34.4%), 기술교육(28.4%), 중간관리자과정교육(23.1%), 운전면허교육(22.9%), 교육 원하지 않음(4.5%) (2013년)
 - 경제적 기회 제공(귀국 안하려는 이유) : 모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48.3%), 한국의 생활여건이 모국보다 좋아서(14.1%), 충분히 돈을 못벌어서(4.4%) (2016년)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외국인근로자의 평가: 자국민근로자에 도움(4.12/5), 자국경제에 도움(4.17/5) (2010년)

III. 이주노동의 호혜성 증진 방안

- 외국인력 도입의 유연화
 - 한국인 기업체의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요구: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속기간 연장(26.0%), 도입절차의 간소화 및 도입과정의 신속화(23.4%), 전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18.2%), 기업규모별 인원 할당비율 확대(9.7%) (2013년)
 -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취업 연장희망: 원함(80.2%), 원하지 않음(19.8%) (2010년)
 - 외국인력 도입의 당사자인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외국인력 도입의 확대와 취업연장을 바라는 만큼 국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수급 및 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 한도 내에서 외국인력의 도입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숙련 외국인력의 비중 확대
 - 미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은 국내 사양산업을 유지하고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됨
 - 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취업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이들이 귀환했을 때 본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도입 인력의 숙련수준 향상은 현지의 인적자원 개발에 도움을 줌
- 사업장 변경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체의 입장을 조절
 -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많고 작업조건이 좋은 업체로 이직 원함
 - 사업체: 임금을 줄이면서 외국인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기를 원함
 - 사업체 변경조건과 변경횟수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체의 의견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아울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적절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현재: 최초 3년이내 3회, 연장 1년10개월내 2회 허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강화 및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상호문화교육 활성화
 - 모든 사회생활에서 언어는 필수요건
 - 외국인근로자가 느끼는 한국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점: 언어문제(36.5%), 외로움(13.8%) (2013년)
 - 외국인력 고용업체가 바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한국어(3.9/5), 근로의식(3.8/5), 한국문화(3.76/5) (2013년)
 -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애로사항: 외국인근로자 확보(3.29/5), 의사소통(2.87/5), 문화/생활 습관 차이(2.50/5) (2016년)
 -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
- 작업장의 안전시설 확대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보험가입을 확대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 취업분야: 3D업종으로 사고와 질병의 위험성이 높음
 -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생활에서의 고충: 작업중 부상(49.2%), 빠른 작업속도(23.5%), 욕설(20.5%), 작업으로 인한 질병(15.4%) (2016년)
 - 보험유형: 4대 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용(귀국비용, 상해), 사업주(출국 만기, 임금체불보증)

- 귀환프로그램의 확대
 - 국가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귀환프로그램 개발 운영
 - 귀환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국가간의 협약 또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연계한 귀환 프로그램 개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외국 현지인력의 기술 증진, 귀환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재취업, 재정착 제고시킬 수 있음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토론문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이주노동과 사회적개발의 관점에서

김미선 상임이사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이러한 때에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을 이주노동과 사회적 개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주-개발의 연계성 담론의 변화를 시대별로 고찰하고 순환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을 조명한 후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인간개발 및 사회개발적 접근, 지역적, 맥락적 접근, 그리고 초국가적 접근을 제시한 발제자의 수고에 감사한다.

먼저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이주-개발의 연계성은 전혀 새로운 논의가 아니며 당대의 지배적인 개발 패러다임과 경제 담론과 그 맥을 같이 해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이주와 개발에 대한 담론이 충분한 경험적 사례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점은 그만큼 실천적인 실험과 노력들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본 토론문은 국내 이주민인권단체들이 이주와 개발 논의과정 개입을 통한 인권기반 개발 담론의 적용과 이주노동자 귀환과 재통합 프로그램의 경험을 재조명하면서 발제자의 대안적 접근의 적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이주-개발 논의와 이주민 인권

먼저 국제적인 장에서 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4년 유엔 인구와 개발회의(카이로회의) 행동계획 10장에 국제이주가 포함되어 송금, 단기이주, 지식과 기술의 이전 등의 이슈와 함께 “출신국과 목적국 커뮤니티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서 있는 국제이주”를 요구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동계획은 국제이주와 개발의 관계에 대해 “국제 이주가 많은 이주민 출신국에서 인적 자원의 손실을 수반하고 목적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효과적인 국제이주를 위해서는 국제이주 정책이 고용국의 경제적 제약들, 이주가 고용국에 미치는 영향과 출신국에 나타나는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국제 이주의 장기적인 관리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자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후 이러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계기는 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03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이주위원회(GCIM)가 2005년 유엔 회원국과 국제사회에 사람의 이동과 이주와 개발의 상호연관을 포함한 이주 거버넌스를 담은 여섯 가지 행동원칙에 관한 보고서 제출과 이어 2006년 9월 14-15일 유엔 최초로 국제이주와 개발에 관한 고위급회담이 개최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역사적인 회의 후속으로 2007년부터 정부간 상설 포럼인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이 설립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첫 번 포럼부터 ‘정부주도(states-led)’의 의미가 ‘정부들만의(states-only)’ 회의가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주와 개발 논의 프로세스에 시민사회의 개입을 필수적인 것을 만들었다. 따라서 포럼은 정부회의와 시민사회의 날을 공식일정에 포함하고 중간에 공동의 장을 설치하여 해마다 정부-시민사회간 논의와 실행의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실례들을 만들었고 정부들이 제기하지 못하는 이슈들을 제기함으로써 정부회의 내용을 보완하고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차원의 관계형성을 해왔다. 또한 시민사회는 공식회의와 별도의 독자적인 민중국제행동을 조직하여 인권에 기반한 국제이주와 개발 논의와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째 국제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담을 준비하며 일곱 가지 의제에 대한 5개년 실행계획을 담은 시민사회제안서를 마련 유엔 총회와 유엔 사무총장, 유엔 총회 제2위원회 및 기타 뉴욕주재 각국 유엔 대표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제안서에 담긴 일곱 가지 의제는 1)이주노동자 송출업체 규제, 2)재난과 고통에 처한 이주민 보호, 3)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 이주 의제 포함, 4)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5)이주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 6)국내 입법 강화, 7)국제적인 메카니즘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이어서 2014년 6월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와 네트워크는 "2015년 이후 국제적 및 국가별 개발의제에 이주민과 이주를 포함하는 스톡홀름 의제"를 발표하였다. 스톡홀름 의제는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과 동시에 열린 시민사회 논의과정을 통해 전 세계 이주민들의 인권과 개발

에 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모든 정부들이 사람중심의 인권옹호 책임을 준수할 것, 노동이주의 근본원인과 이주민 공동체 탄압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 ILO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모두에게 차별 없는 적정한 노동을 지지할 것, 출신국이나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의료, 주거와 사회보장 등 사회보호 권리를 보장할 것, 본국 기회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주가 아닌 노동이주가 선택이 되도록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주와 개발 담론에서 시민사회는 이주민 공동체와 더불어 인권에 기반한 개발/발전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적인 개발 논의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실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개발의 연계성 논의를 경제개발 중심에서 인간개발/발전 중심으로 보게 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단지 사고파는 노동력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2. 이주노동자 귀환과 재통합 프로그램 - 한국의 경험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함께 그들이 겪는 임금체불, 산재, 의료,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에 노력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반복되는 문제해결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이주노동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내 이주노동자 상담소와 인권단체들에게 이주노동자 귀환 및 재통합 지원프로그램이 알려진 것은 1996년 홍콩소재 Asian Migrant Centre(AMC)의 이주노동자 저축과 대안적 투자 사례가 소개된 데서부터 출발한다. 당시 AMC의 필리핀 이주노동자 귀환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저축 모델의 개발까지 나아갔다.

이후 한국에서 몇 개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중심으로 필리핀의 귀환 모델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 내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아 이주노동자 스스로 귀환을 전제로 설정하지 않았고, 둘째, 귀환을 위한 공동체 조직을 국가 단위로만 하여 공동체 내 상호간 신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고, 셋째, 전문적인 기술 보급의 노력이 부족했고, 넷째, 귀환 및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주노동자 상담소와 이주노동자간의 확고한 신뢰부족 등이었다.

이후 이주노동자 귀환과 재통합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개별 상담소만으로는 역량과 정보 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개별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개별 상담소 차원에서 진행하지만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사업을 위한 정보 통합, 새로운 정보의 학습과 다양한 내용 개발, 나아가 사회적 여론 환기를 위해 체계적인 귀환 조직을 형성하기로 하고 2004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를 주축으로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었다.

컨소시엄은 이주노동자의 건강한 한국생활을 유도하고 자국 사회개발 의식 고양과 모델을 개발하여 이주노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귀환하는 이주노동자를 통해 아시아 사회개발 협력과 빈곤극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내 이주노동자와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계획하는 예비 이주노동자, 그리고 본국 가족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당시 진행한 주요 사업으로는 단체 실무자 및 이주노동자 공동체 리더 대상 공동체 교육(지역사회조직가 교육), 송출국 6개국(베트남,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현지 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욕구조사, 해외 전문 실무자 양성교육, 컴퓨터와 무역실무 등 실무교육 진행, 현지 교육 모니터링 사업, 귀환 및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발간 (8개국어), 정부합동 토론회, 기능교육 안내서 발간, 자동차정비교육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귀환과 재통합 프로그램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는 다른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의식의 변화와 노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귀환과 재통합 프로그램이 이주노동자들의 장기 체류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오해도 있었지만 이주노동자 자신이 이주의 발생요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귀환과 재통합은 경제적 필요에서 출발한 이주의 흐름 속에서 이주노동자 자신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계획하여 실천함으로써 기 능이나 결과 중심이 아닌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3. 단기 순환이주와 개발

단기순환 이주노동정책은 많은 아시아 나라들에서 채택하는 정책이다. 발제에서 살펴본 대로 단기 순환이주는 이주-개발 연계성과 담론의 발전과정에서 송출국, 유입국, 이주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 성공여부인 자발적 귀환은 전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다 보니 귀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때로 과도한 불법체류 방지대책과 맞물려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베트남의 귀국보증금 예치제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과도한 귀국보증금 요구는 오히려 불법체류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귀환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강요된 귀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이 불가피한 이주 혹은 강요된 이주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귀환 역시 자발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순환 이주정책이 이주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해도 유입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수용과 사회통합, 이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나 이민정책이 없다면 순환이주정책은 단기적인 통제효과밖에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과 송출국, 유입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인권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천전략들을 통해 빈곤, 개발, 이주의 근본원인, 실직, 부채, 공정거래, 분쟁과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민들의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최근 이주 개발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송출개혁 논의와 무료 송출비용 캠페인, 대안적 윤리적 송출, 공정고용운동 등은 참고해볼만한 새로운 시도이다.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토론문

호혜적 개발을 위한 한국 이민정책의 과제
: 송출국과의 협력 및 이민자의 역량 활용

이규용 연구실장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이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경제적 이유나 취업목적, 가족결합, 인도주의 등이 주된 이유이나, 일차적인 사유로 볼 때 경제적 이유나 취업목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간 노동이주가 소득이 높은 국가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간에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이동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유입국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이주는 유입국과 송출국 모두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는 편익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노동이주가 유입국과 송출국 모두에게 긍정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의 운영 및 설계가 필요하다.

유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 생산을 늘리는데 기여하며 이들이 장기 거주하는 경우, 노동자로서 뿐 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커지므로, 수입의 일부분을 소비한다면 노동에 대한 파생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외국인력들의 낮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내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만연해 있는데, 외국인력들이 낮은 임금과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을 이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임금감소 또는 임금증가율의 억제, 및 실업, 주택, 취학인구, 범죄, 문화와 공동체 해체, 복지 지출, 공공서비스, 공공재정 등의 문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송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주민의 송금, 투자, 기술이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노동력의 유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송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핵심의제는 송금액의 경제적 활용과 송금흐름의 경제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송금의 경제적 활용이란 송금이 단순히 빈곤에서 벗어나고 보다 나은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됨을 의미한다. 송금은 다른 유형의 국제적 자본흐름인 FDI나 ODA와는 기본적으로 동기가 다르다. 송금의 동기로는 자국에 남아있는 가족, 부모 형제자매들의 소득증대로 빈곤 탈피와 같은 이타심, 자기 자산의 증식과 같은 완전한 사리추구, 자녀·형제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가족 간의 암묵적 합의 혹은 상호 교환과 보상, 가족 간의 동의하에 일정한 목표 수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송금하는 목표 지향적 저축 등이 있다. 송금과 경제개발은 주요한 정책이슈이다.

국제이주에 따른 쟁점 중 하나는 두뇌유출이다. 두뇌유출은 출발지 국가(origin country)의 인적자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활동 수준과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두뇌유출이 경우에 따라 출발지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론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두뇌유출이 출발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두뇌유출자 중에 일부가 다시 본국으로 귀향함에 따른 경제적 효과이다. 두뇌유출자가 출발지 국가에서는 취득 가능하지 않은 인적자본의 투자를 도착지 국가에서 하게 된다면, 귀향 두뇌는 원천 출발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간 이주는 정주형 이민형태뿐만 아니라 한시적 체류의 순환이민의 형태가 같이 이루어지며 순환이주자에 대해서는 귀국지원이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되어 왔다. 특히 순환이주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며, 이런 점에서 귀환지원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유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귀국 지원이지만 송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귀환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OECD의 연구(SOPEMI, 2008)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20~50%는 수용 지역(host region)으로 이주한 지 5년 내에 그 지역을 떠나며, 상당수는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되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고국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주는 그들의 삶에 있어 한시적 과정일 뿐이다. 어떤 귀환 이주노동자들은 귀국 후 성공하는 반면에 다른 귀환 이주노동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귀환지에서의 정착지원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정책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적자원 가설(Human Capital Hypothesis)을 차용하면 귀환 이주노동자가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고 전제한다. 귀국 후 고국의 지역노동 시장에 취업하면, 기업들은 이러한 해외에서 얻은 지식을 공정 및 상품 혁신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근무 경험이 의미 있는 인적자본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출신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특별히 해외 근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베트남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귀환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현재 일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현재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체류가 귀환 후 현재 생활 환경에 불만이 있는 응답자는 8.9%, 매우 불만족스러운 응답자는 0.7%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정규 및 비정규)의 대다수는 한국 생활로 인해 현재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 305명 중 63%는 한국으로 취업되지 않았다면 현재 생활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 답했고, 심지어 26.6%는 한국에서 체류 및 근로 경험이 없었다면 현재 생활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체류 경험과 현재의 일자리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

- 한국어 능력: 응답자의 81% (정규 60.9%, 비정규 43.9%)는 한국어 능력이 현재 일자리에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 한국에서의 근로 경험: 취업 중인 응답자의 57%(정규 60.9%, 비정규 43.9%)는 한국에서 쌓은 경력이 현재 하는 일과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 한국에서 배운 기술: 취업 중인 응답자의 57%(정규 60.9%, 비정규 43.9%)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현재 하는 일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 한국의 기업 문화: 취업 중인 응답자의 63.7%(정규 66.7%, 비정규 53.7%)는 한국에서 배운 비즈니스 문화를 현재 직장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 한국체류 경험: 현재 취업 중인 귀환근로자의 39.7%(정규 66.7%, 비정규 53.7%)는 한국 체류 경험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체류 경험이 현재 일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3분의 2 정도라고 볼 수 있다.
-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전체 응답자의 71.5%(정규 73.2%, 비정규 65.9%)는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현재 일자리에 유용하지 않다고 한다.
- 한국에서 보낸 송금: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본인의 취업에 있어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2.1%(정규 71%, 비정규 75.6%)는 본국송금 덕분에 현재 일자리에 보다 쉽게 취업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귀환 후 노동 시장 정착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근로자들의 귀환을 촉진시키고 이들의 재정착을 도와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유입국과 송출국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다음과 같은 귀환조치가 필요하다.

- 1) 귀환 장애요인 제거: 이주노동자들의 고국 귀환 의사는 해당 정착 국가뿐 아니라 출신국가의 제도 및 상황적 요소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2) 귀환 이주노동자의 잠재력 실현에 유리한 기본 조건 형성: 이주노동자의 출신 국가는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인증 문제를 해결하고, 두뇌 순환 (brain circulation)을 촉진하며,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고숙련 국적자들의 실질적 또는 임시적 귀환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 3) 광범위한 양질의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 귀환 이주노동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더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정착, 자영업 및 지역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적극적 지역 개발 전략에 있다.

또한 이주근로자의 귀국지원을 위한 유입국의 역할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귀국지원정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및 현지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협력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의 편익 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책 기반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주근로자의 해외에서의 노동 및 체류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인적자본투자의 과정이며, 귀환을 대비한 교육훈련이나 귀환이후의 경제활동의 핵심자본으로서 송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고용허가제 체계에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와 같이 정부의 관리체계를 통한 이주근로자의 활용방식은 이주근로자에 대한 체류지원이나 귀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하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편 귀환지원의 필요성은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인력들은 매년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해외취업지원정책을 통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순환이주 형태의 한시적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귀환을 지원하고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지원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인력의 해외진출과 귀환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양자는 통합된 정책의 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시대에 귀환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토론문

한국적 상황에서의
이주를 매개로 한 호혜적 개발

임선영 전문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토론에 앞서 많이 배우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되어 감사드립니다.
이정환 교수의 발제문은 노동력의 이동, 즉 이주노동이 언제, 어떤 형태로 한국사회에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이주노동이 가지는 송출국과 도입국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 호혜성과 그 증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의 호혜성 증진 방안에 대한 이정환 교수의 논의에 동의하며, 부연적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이주노동자 현황

2016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이주민은 142만 5천명이며, 그 중 취업자는 96만 2천명으로 한국사회가 이주노동 백만 시대에 도입했습니다.

취업자의 66.3%(63만 8천명)가 남성이고, 여성은 33.7%(32만 4천명)이지만, 전년대비 남성은 1.9%, 여성은 4.0%가 증가하여 여성 이주노동자의 증가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성별 비교를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는 91.2%(23만 8천명)가 남성, 8.8%(2만 3천명)가 여성이지만, 외국국적 동포 대상 방문취업(H-2)의 경우 60.6%(13만 4천명)가 남성, 39.4%(8만 7천명)이 여성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우리 정부가 고용허가제라는 틀 속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한 업종이 비전문취업(E-9)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위주이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거나, 방문취업(H-2)은 일반음식점업, 호텔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등 서비스업과 돌봄산업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호혜적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고 이주자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되면서, 이주관리 정책에서 벗어난 통제되지 않는 이주자들도 증가하고 이주민에 대한 복지비용 발생과 사회적 갈등 초래 등 이주와 관련된 문제는 해당 국가에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2006년 9월 뉴욕에서 열렸던 ‘UN 총회 국제이주와 개발에 대한 고위급 회담’과 2007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에서 이주가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은 전 세계의 정부들과 시민사회가 모여 도입국과 송출국의 생산력 향상과 경제적인 번영에 기여하면서 도입국 내에서 이주민이 공정하고 인도적으로 대우를 받도록, 이주와 개발 이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원칙 틀 속에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채택하였고, 이주 이슈 또한 중요 의제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과제에 포함됩니다.

다음해인 2016년에 이루어진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문’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사회와 국가의 책무로 ‘법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난민과 이주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며, ‘이주자가 정착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기여를 강화’할 것 등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3.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Development’는 일반적으로 개발 또는 발전으로 읽혀지나, ‘개발’과 ‘발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봄. 개발이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유용하게 하는 물질적 개념이라면, 발전은 사물, 사람, 사회 등 모든 것에 대해 보다 나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라고 토론자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개발’이라는 단어 앞에 ‘인권기반의 호혜적’ 관점을 두고 있어, 도입국, 송출국의 이주관리 정책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 이주민의 인권이 도입국 내에서 보장되는 이주인권 정책을 포함하는 내용이라 여깁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도는 산업연수생이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3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현상이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국인력을 정당하게 고용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태생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보호 및 정주화 방지를 위해 ‘가족동반 불허’,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시행되는 과정에서 ‘출국만기보험제도’, ‘계절근로자 도입제도’ 등 고용주에게 유리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이주노동의 호혜성 증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의 유연화’, ‘숙련 외국인력의 비중 확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체의 입장 조절’ 등은 도입국(국내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송출국(이주노동자)의 입장도 다소 고려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 이주노동자를 좌절시키는 요소 중 하나인 산업재해⁹⁾는 호혜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안전교육 강화 등의 예방대

9)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설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재해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29.5%)이 건설업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8.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산업재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2016년 한 해에 전체 이주노동자 중 사망한 사람은

책, 산재보험 처리 과정의 어려움, 내국인과의 보상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정책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한국적 상황은 외국인력 모집(recruit)정책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고려만큼,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return) 활성화, 장기 체류로 인한 가족동반의 권리, 정주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권리 확대 등 이주가 끝내는 귀환 또는 정착 단계에 대해서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자를 불렀으나 사람이 왔다.(We asked for workers. We got people instead.)’는 스위스 작가 Max Frisch의 말처럼, 한 국가의 이주정책은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행에서 오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88명이고 그 중 건설업 사망자는 40명(45.5%)으로 중대재해에 이주노동자가 더 취약함을 알 수 있음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사-계-비-망-포-럼

한국 거주 몽골 이주민 사회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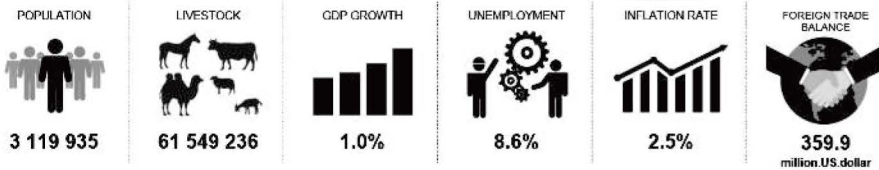
이라 회장

(전, 경기도의원 / 재한몽골인단체총연합회)

- 한국과 몽골의 교류
- 몽골이주민 현황
- 이주민의 사회 경제활동의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거주 몽골이주민들의 사회 활동 참여 현황
- 이주민들이 한국과 귀환 후 본국 사회 경제 활동 사례
- 이주민공동체 활동의 사회 역할과 한계 정책 방안



몽골(Mongolia)
 수도: 올랑바타르
 면적: 1,567,000km², 한반도의 7.4배



출처: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 2017.04.20 <http://www.en.nso.mn/>

몽골 체류 한국인 2,382명

몽골 이민청은 체류 외국인 현황을 발표하였는바, 외국인 총 22,336명이 체류 중이며 이중에는 △중국인이 7,238명, △러시아인이 2,689명, △한국인이 2,382명 순위로 체류하고 있다.

(출처: Zuunii Medee 2015.2.11.)

한국과 몽골의 교류

※ 정부 간 조약/협정

| | | | | | | |
|------|-------|---------------------------------|-------------------------|----------------------------------|--|--|
| 1990 | 03.26 | · 한/몽골 외교 관계 수립(북한과는 1948년에 수교) | 1991 | 03.28 | · 루자의 상호 출생 및 보호에 관한 협정(4.28 발효) ·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4.20 발효) · 무역협정(4.30 발효) · 경제개발기금(EDCF)협정(4.30 발효) | |
| | 06.09 | · 김영삼 초대 주 몽골대사 신임장 제정 | | 10.23 | · 영역간 및 그 이외의 합법 업무를 위한 협정(11.28 발효) · 외교관, 관공에 관해 대한 사증의 상호 인정 협정(12.22 발효) | |
| | 06.18 | · 주 몽골 한국대사관 개설 | | 1992 | 04.17 | · 이등과세방지 협정 체결 · 소르에 대한 조세의 이등과세 회피와 판매장치를 위한 협약(93.6.8 발효) |
| 1991 | 02.01 | · 주한 몽골대사관 개설 | 1993 | | 07.09 | · 다몽골 다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발표 |
| | 04.23 | · 초대 주한 몽골대사 우르진 훈대브 신임장 제정 | | | 07.28 | ·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협정(08.27 발효) |
| | 10 | · P.Ochibat 대통령 방한 | | 03.12 | · 다몽골 다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 | |
| 1992 | 07.06 | · 제2대 김교식 주 몽골대사 신임장 제정 | 03.02 | · 다몽골 다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 | | |
| | 1994 | 09.15 | · 제3대 김정은 주 몽골대사 신임장 제정 | 1997 | 03.18 | · 다몽골 다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 |
| 1997 | | 05.13 | · 제4대 황길신 주 몽골대사 신임장 제정 | | 1999 | 05.31 |
| | 1999 | 05 | · 김대중 전 대통령 방몽 | 11.08 | | · 에너지 및 공동자원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 | | 09.17 | · 제5대 최영걸 주 몽골대사 신임장 제정 | 2003 | 11.24 | · 관공분야 협력 서명 |
| | | | 2005 | 08.17 | · 다몽골 다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 |

출처: (사)한몽교류진흥협회 <http://www.komex.or.kr/>

한국 거주 몽골이주민 현황 (해외 거주 몽골인 15만명)

연도별 입국자 현황(누계)

| 연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6년 1-2월 | '17년 1-2월 | 전년 대비 |
|-----|----------|----------|----------|----------|--------------|--------------|----------|
| 총 계 | 12,200,4 | 14,264,5 | 13,359,7 | 17,418,3 | 2,251,26 | 2,524,36 | 112.1% |
| 몽 골 | 73 | 08 | 01 | 07 | 6 | 16,440 | 123.4% |
| | 66,489 | 64,096 | 81,201 | 82,780 | 13,323 | | % |

체류외국인 연도 및 국적·지역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13 | 2014 | 2015년 | 2016년 | 2017년 2월 |
|-----|-----------|-----------|-----------|-----------|-----------|
| 총 계 | 1,576,034 | 1,797,618 | 1,899,519 | 2,049,441 | 1,986,353 |
| 몽 골 | 24,175 | 24,561 | 30,527 | 35,206 | 36,661 |

몽골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총 계 | 유학(D-2) | 한국어연수 (D-4-1) | 외국어연수 (D-4-7) |
|----------|---------|---------|------------------|------------------|
| 총 계 | 123,192 | 86,729 | 36,450 | 13 |
| 몽 골 (3위) | 6,115 | 3,171 | 2,944 | 0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이주민의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노동력은 2013년에 총 취업자의 3%, 임금근로자의 4.4%를 차지한다. 2015년 전체 혼인 중 7%가 국제결혼이며, 혼인이주자와 그 후손은 2050년에는 총인구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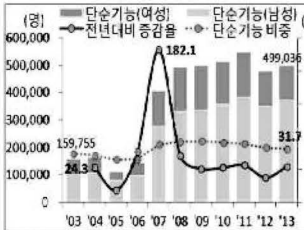
건설현장 사례를 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간한 '2015년 퇴직공제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하루라도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 있는 노동자는 139만 명으로, 이 가운데 50대 이상은 72만9718명(52.2%)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2014년 건설현장 이주노동자는 39만2000명으로 전체의 8.0%에 해당했는데, 2011년 5.8%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고령화가 지속되는 추세지만 30대 이하 이주노동자는 2013년 32.0%에서 2014년 33.9%, 지난해 37.8%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내국인력 대체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숙련 노동과 숙련 노동, 그리고 자본은 서로 보완재의 관계에 있으므로, 저숙련 노동력이 증가하면 저숙련인력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대신 숙련인력과 자본의 지위는 개선된다. 숙련 노동과 자본은 대개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숙련 노동과 자본을 보유한 내국인은 이민인력의 유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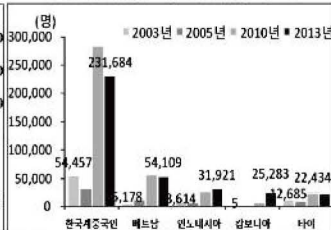
외국인 유입 증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완화, 출산율 제고 등을 통한 국내 잠재성장률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보장부담 및 사회갈등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14.08.25. 14-31

< 단순기능인력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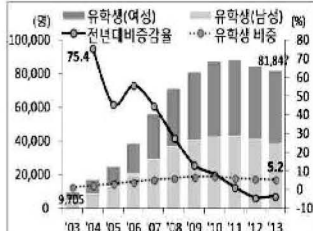


< 단순기능인력 배출 상위국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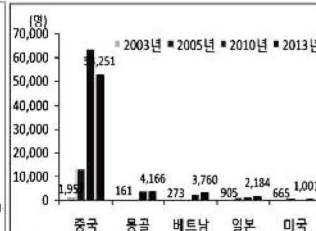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및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한 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 단순기능인력 비중은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단순기능인력의 비중을 의미.
 2) 국적별 체류 외국인 추이 변화는 2013년 기준 상위 6위 국가만 서술.

< 유학생 추이 >



< 유학생 배출 상위국 추이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및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한 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 2003년은 유학(D-2) 비자소지자만을 의미, 2004년부터는 한국어연구(D-4-1) 비자 소지자 포함.
 2) 유학생 비중은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유학생의 비중을 의미.
 3) 유학생 배출 상위국 추이는 2013년 기준 상위 5위 국가만 서술.

해외 및 한국 거주 몽골이주민들의 사회 활동 참여 현황

재외몽골인총연합회 (설립2014)

회원 25개국 113개 단체

국가 별 대표로 구성 되어 몽골의 외교부와 협력

해외 거주 몽골인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참여, 이주민 단체간 교류 및 협력 활동 지원



재한몽골인단체총연합회 (설립 2017.03)

회원 단체 23개(서울, 인천, 경기 권)

커뮤니티 참여 대상: 유학생, 유학 출신 취업자, 이주노동자, 사업가, 결혼이주민 등

활동 분야: 몽골언어, 문화, 스포츠, 다양한 정보 교류 및 교육, 몽골 아동 및 소외계층 지원 등



한국 거주 몽골이주민들의 사회 활동 참여



한국 거주 몽골이주민들의 본국과 관련 활동 사례 1: Let's KO-MONG

환경개선 프로젝트: 지역 아동 대상 농구장 및 교육장 설립

진행 방법: 다양한 모금 활동 → 단계별 사업 진행 → 완성된 시설 관리 및 모니터링



앞으로 계획:

빈곤지역 주민 대상 프로젝트: 직업 교육, 작업 실 운영, 환경 개선 사업 진행

프로젝트 참여 대상:

몽골유학생, 한국 대학생, 몽골 관심 있는 일반인, 몽골 방문 여행객 등 누구나

한국 거주 몽골이주민들의 본국과 관련 활동 사례 2: 재한몽골인단체총연합회



제 13회 몽골의 발전포럼

2017년 5월 13일(토)
10:00 - 17:00
국립국제교육원

몽골의 미래 주제 포럼

- 한국과 몽골의 비즈니스 환경 및 시력
- 동아시아와 몽골
- 몽골의 비즈니스 모델 방향

제2회 동아시아 지역 몽골유학생 포럼

- 대학생, 청년들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와 기여 주제 포럼

재한몽골인 단체 연합해 서로 정보 교류하고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며, 단체 커뮤니티들이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양 국가간 사회 발전에 민간 역할과 기여를 기대.

몽골 발전 포럼은 (1) 한국 및 해외 몽골 커뮤니티 대표자들의 교류 (2) 한국에서의 이주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에서 성공적 귀환 이주민들의 사례 (3)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앞으로 양 국가간의 사회 발전에 민간적 기여를 높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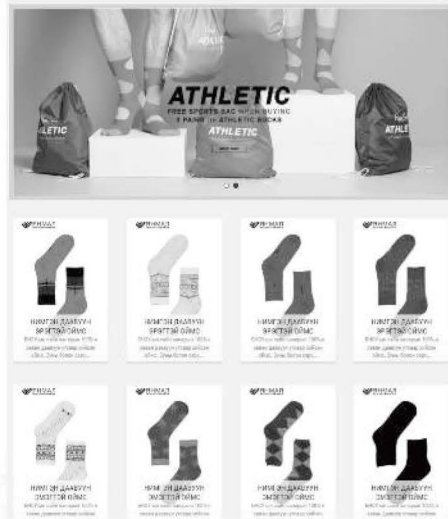
몽골이주민들의 본국 귀환 후 활동 사례 1: “양말” 창업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양말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으로 창업

설립: 2005년

초기 현황: 총 3명, 양말 만드는 기계 2대로 시작

지금: 총 60명 직원, 기계 58대, 매장 4곳, 국내 양말시장 25% 생산, 러시아, 일본, 캐나다, 스웨덴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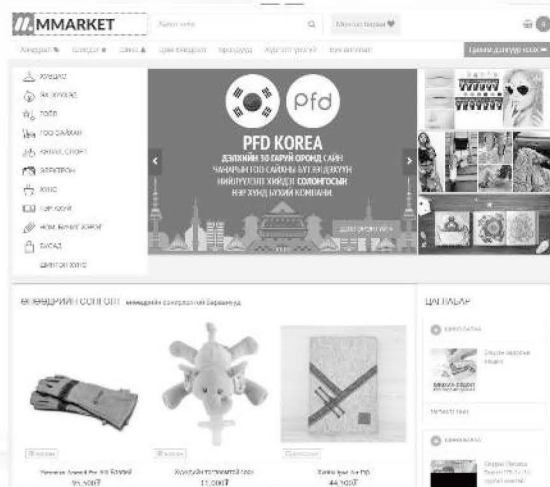
몽골이주민들의 본국 귀환 후 활동 사례 2: MeC Partners LLC



유학생에서 사업가 된 몽골 청년들 몽골 첫 온라인 쇼핑 포털 개설 운영

한국 대학교 졸업 후 국내 대기업 취업 → 해외 대기업 취업 → 기술을 활용한 본국 사업

온라인 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등 개인에 넓은 시장을 마련, 배달 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서비스 문화 도입 및 고객 편의 상승



이주민공동체 사회 역할과 한계, 정책 방안

지역 기관 단체 지원 사례

- 서울시: 외국인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커뮤니티 별 600만원까지)
- 서울 글로벌센터, 동대문글로벌센터 : 외국인 커뮤니티 사무공간 각 5단체 총 10개 단체가 이용 중, 강의실, 세미나실 지원, 행사 지원비 50만원까지
-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스타트업 보육 센터, 코워킹 스페이스 7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공간, 10인실 및 4인실 세미나실

이주민 사회 활동 지원정책 방안:

- 소수적인 틀에서 벗어나 이주민 조직이 이주민의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역할을 높을 수 있고 안전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 마련
- 한국인 사회 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및 공동 참여활동 활성화
- 기술 교육을 통한 경제활동 기회 마련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사-계-비-방-포
2017

2017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 필리핀 사례

유진 도코이 신부

(산 칼로스대학교)

필리핀인의 한국으로의 이주

그 과제와 가능성

Philippine Migration to Korea:

Challenges and
Potentials

I. 필리핀인들의 해외이주 역사

A. 식민지 시대

1. 스페인 식민지 시기
2. 미국 식민지 시기
3. 일본 점령 시기

B. 식민지 시대 이후

1. 미국으로의 이주
2. 유럽으로의 이주

I. History of Philippine Migration

A. Colonial Times

1. Spanish Colonization
2. American Colonization
3. Japanese Occupation

B. Post-colonial Times

1. Migration to US
2. Migration to Europe

1. 필리핀인들의 해외이주 역사

C. 중동으로의 이주

D. 아시아 주요국가로의 이주

- 일본 - 연예인
- 말레이시아 - 농부, 중개상
- 타이완 - 공장 노동자
- 싱가포르 - 가사도우미, 전문직
- 홍콩 - 가사도우미
- 태국

History of Philippine Migration

C. Migration to the Middle East

D. Migration to Tiger Nations

- Japan - entertainers
- Malaysia - farmers, traders
- Taiwan - factory workers
- Singapore - domestic helpers, professionals
- Hong-Kong - domestic helpers
- Thailand

II. 이주자 유형

- 전통적 유형: 공장 근로자, 노동자, 가사 도우미
- 일반적 유형 - 숙련 노동자
- 혁신적 유형 - 공공/민간 사업가, 영어 교사
- 최근 유형 - 관광업, 교육, 결혼 이주

II. Types of Migration

- Traditional - factory workers, laborers, domestic helpers
- Conventional - skilled workers
- Innovative - business (government and private), English teachers
- Emerging types - tourism, educational, marriage migrants

III. 한국으로의 이주

- 음악가
- 노동자
- 학생
- 종교적 이주
- 결혼 이주
- 2005년부터 14,000명(CFO)
- 2014년 1,700명
- 2015년 1,200명
- 2016년 700명

III. Migration to Korea

- Musicians
- Workers
- Students
- Religious
- Marriage migrants
- I. 14,000 since 2005 (CFO)
- II. 1,700 in 2014
- III. 1,200 in 2015
- IV. 700 in 2016

IV. 이주자들의 필리핀에 대한 기여

- 해외송금
- 기술 이전
- 비즈니스 창업
- 관광업 개발
- 사회복지 협력: 재난 개입, 결혼 이주
- 경제문화 발전: 기업가 정신, 저축, 경제 계획

IV. What migration has done to the Philippines

- Remittances
- Technology transfer
- Business establishments
- Tourism development
- Social welfare collaboration: calamity interventions, marriage migrants
- Development of economic culture: entrepreneurship, savings, planning

V. 이주자들의 잠재력

1. 경제
2. 사회
3. 정치
4. 환경
5. 교육
6. 보건
7. 문화
8. 정신 활동

V. Migrants Potentials

1. Economics
2. Social
3. Political
4. Environmental
5. Education
6. Health
7. Culture
8. Psycho-spiritual Activities

VI. 개인적인 노력

- 저축과 투자 등 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재통합
- 필리핀재외동포위원회(CFO) 참여
- 빈곤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협력 추진
-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이주 경험이 있는 OFW(해외이주자)들의 중재/개입

VI. Personal Efforts

- Reintegration programs through financial savings and investment.
- Involvement with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CFO).
- Facilitates collaboration for academic assistance to poor children.
- Intervention for former OFWs in distressed situation

이주자 저축과 투자에 관한 두 가지 계획

1. 마티나오 라이스(Matinao Rice)센터: 민다나오

- 홍콩, 타이완, 한국 이주민 그룹 간의 공동 컨소시움
- 다양한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음: 부당 경영, 기후 문제, 경쟁 심화, 센터를 지원하는 NGO와의 관계
- 그러나 적절한 지침이 있다면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2. Vision for a Better Tomorrow MPC: 보홀

-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희망적임

Two Initiatives on Migrant Savings and Investments

1. Matinao Rice Center: Mindanao

- Joint consortium between Hongkong, Taiwan and Korean migrants groups.
- Plagued with many problems: mismanagement, climactic factors, strong competition, weak mentorship by sponsoring NGO.
- Still I believe on its potential if given proper guidance.

2. Vision for a Better Tomorrow MPC: Bohol

- Struggling but hopeful.

이주민 저축 및 투자 프로그램의 작은 성과들

1. 저축 및 투자 문화 창조
2. 경영 기술 발전
3. 이주민이 미래를 계획하도록 격려함
4. 이주민이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장려함

향후 필요 사항

1. 정부에서 비정부기구로의 자본환원
2. 밀착형 기술 및 경영 지원
3. 네트워킹
4. 기술 훈련

Humble Achievements on Migrant Savings and Investment Program

1. Cultivating the culture of saving and investment.
2. Entrepreneurial skill development.
3. Encouraging migrants to plan for the future.
4. Encouraging migrants to go back to their families.

Need to be done:

1. Capitalization from GO or NGO.
2. Close technical and managerial support.
3. Networking.
4. Skill training.



VII. 지원 기구

- 정부간 기구: 한국, 필리핀
- 비정부 기구: 한국, 필리핀
- 종교단체
- 시민사회

VII. Support Institutions

- GOs: Korea and Philippines
- NGOs: Korea and Philippines
- Religious Organizations
- Civil Societies

VIII. 지속적인 장애요인

- 계획 부재
- 저축 관념이 희박함
- 축하 문화
- 규율 문제
- 미약한 가정 기반의 지원 시스템
 - 마약 문제
 - 범죄 문제
 - 인권 문제
 - 정부 및 민간 분야에서의 부패와 비효율성

VIII. Lingerin Challenges

- Lack of planning
- Very weak sense of saving
- Culture of celebration
- Discipline issues
- Weak home based support system
 - issues of drugs
 - criminalities
 - human rights issues
 - corruption and inefficiency i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IX. 강조점

- 이주자들이 적절하게 지원 받을 경우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경제적으로 중산층
- 교육 받은 계층
- 이주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는 매우 희박함: 관련 계획이 반드시 필요함

IX. Important Notes

- Migrants have high potentials: if harnessed
- Economically middle class
- Educated
- Migrants have very little opportunities upon return: absolute need to plan.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세계개발포럼

재한 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본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중심으로

원옥금 대표

(재한베트남공동체, 서울시외국인명예시장)

목 차

공동체 소개

공동체 활동 소개 (본국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이주민 공동체 본국 발전 기여 활동의 한계와 전망

재한베트남공동체 소개

- ▶ 한국내 베트남 이주민 현황
 - 2017년 2월말 현재 146,649 명 체류 (베트남국적자 기준)
 - 남 69,662 (47.5 %) 여 76,987 (52.5%)
 - 별도로 약 15,000명 정도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이주여성도 있음
 - 노동자 약 57,000 명, 결혼이민 약 53,000, 가족 약 15,000 명, 유학생 6,000명, 단기체류 및 기타 약 15,600명
 - 1992년 수교이래 초기에는 산업연수생 중심의 이주민에서 점차 결혼 이주 여성 및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가 베트남 이주민의 주류가 됨

재한베트남공동체 소개

- ▶ 한국내 베트남이주민 공동체 현황
 - 현재 한국에 귀화자 포함 약 17만명의 베트남 이주민이 장단기 체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여러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음
 -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협력 관계인 재한베트남교민회 및 베트남여성연합, 베트남유학생회가 조직되어 있음
 - 그러나 전체 베트남 이주민을 조직적으로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출신지별 다양한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활동함
- ❖ 재한베트남공동체는 여러 공동체중 하나로 주로 수도권의 이주노동자와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2014년에 결성함

재한베트남공동체 소개

- ▶ 2014 3월 16일 설립
 -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돕자” 라는 슬로건으로 재한베트남공동체를 설립함
 -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이주민이 자기자신의 권리를 찾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베트남 이주민을 서로 돕기 위해 만들



재한베트남공동체 소개

■ 조직 및 회원

- 온라인 조직 - 페이스북을 통해 약 21,000 명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참여
- 오프라인 활동 - 대표1인, 부대표2인, 운영위원 12인, 등록회원 330명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이주민 연대 활동

- 인종차별 철폐 캠페인
- 이주노조합법화운동
- 이주 여성 인권문제

■ 베트남 이주민 자조 활동

- 베트남 이주민 긴급 지원(질병, 사고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이주민) 모금
- 베트남 이주여성 야간 한국어 교실 운영
- 어린이 베트남어 교실 운영(베트남 이주 여성 자녀 대상)

■ 베트남 이주민 봉사 활동

- 농촌 봉사 활동
- 각종 자원 봉사 활동 참여
- 의료봉사 통역 지원

■ 본국 지원활동

- 베트남 어린이 옷 보내기
- 베트남 수재민 돕기 모금 지원
- 베트남 오지 어린이 돕기 자선 축구대회 개최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 이주민 연대활동 (인종차별 철폐의날 기념 대회 공동주최)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 베트남 이주민 자조 활동 (긴급 지원 모금)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 베트남 이주민 자조 활동 (야간 한국어 교실 운영)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 베트남 이주민 자조 활동 (어린이 베트남어 교실 운영)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 본국 지원 활동 (베트남 오지 어린이 겨울 옷 보내기)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 본국 지원 활동 (베트남 수재민 돕기 모금 지원)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베트남 오지 어린이 돕기 자선 축구 대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음
- 한국에서 베트남 이주민 자선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으로 베트남 오지 초등학교의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중임
-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이주민들이 고국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뜻 깊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주민의 정체성을 유지함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베트남 오지 어린이 돕기 자선 축구 대회

Cộng Đồng Việt Nam

베트남공동체

GIẢI BÓNG ĐÁ GÂY QUỸ TỪ THIÊN LÀN THỨ I
제 1회 베트남 오지 어린이 돕기 경기 지역 베트남노동자 축구대회

"HÃY CHO CÁC EM MỘT ƯỚC MƠ"
"어린이에게 희망을 나누자"

Thời điểm: Chủ nhật, ngày 19/10/2014, 8h 00p - 17h 30p
Địa điểm: Sân vận động trường cấp 3 SA 11
Ngày: 2014년 10월 19일 (일) 08:00-17:30
장소: 수일고등학교 운동장 (경기도 수원시 영인구)

Đơn vị tổ chức: Cộng Đồng Việt Nam, 베트남공동체

ĐƠN VỊ ĐỢT TÁC: 한국국제문화교류지원센터

ĐƠN VỊ YAI TRỢ: 수원시청,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수원여주인센터, 범용시장소문선, 수경자보초교교과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 베트남 오지 어린이 돕기 자선 축구 대회



재한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 베트남 오지 어린이 기숙사 건립 지원



BEFORE



AFTER

이주민공동체 본국 발전 기여 활동의 한계와 개선

▶ 본국 발전 기여 활동의 한계

- 이주민 공동체의 역량 부족
 - ✓ 짧은 한국내 베트남 이주민 역사
 - ✓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베트남 이주민
 - ✓ 공동체의 인적 구성이 지속적이지 못함 (이주 노동자 체류기간)
 - ✓ 베트남 이주민의 경제적 여유 부족
 - ✓ 이주민공동체의 법적 지위 한계 (비영리단체 등록 불가)
- 다양한 본국 발전 활동 모델 부재
 - ✓ 단순 모금 지원 방식
 - ✓ 장기적 프로젝트 보다 일회성 지원으로 그침
 - ✓ 경제적 지원에 한정

이주민공동체 본국 발전 기여 활동의 한계와 개선

▶ 이주민공동체의 본국 발전 기여 활동 개선 방안

- 한국의 이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 ✓ 이주민공동체 법적 지위 보장 (비영리단체 등록) -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비영리단체 등록이 필요하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첫째 유급 상근자 1인 이상, 둘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셋째 친목단체 성격이 나타나 명칭 불가이나 이주민 공동체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 이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장소) 필요 - 아직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공동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모임이나 활동을 위한 장소를 자체 역량으로 마련하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여유 공간등을 이주민 공동체의 여유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 필요
- 다양한 본국 발전 활동 프로그램 개발
 - ✓ 단순한 모금 지원 방식 탈피 (이주민 공동체가 현지와 공정무역 프로그램 진행 등)
 - ✓ 문화교류, 양국 문화 교차 소개등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 협력 강화
 - ✓ 이주민공동체, 이주민지원단체, 베트남과 관련있는 투자기업이 함께 베트남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 구성하여 활동
- 이주민공동체가 본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민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고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토론문

한국 거주 몽골 이주민 사회활동 현황

이동화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국내 이주민 유입된 이래 우리사회는 다문화·다인종·다민족 사회로 거듭나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들이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은 여전히 부족해보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주민에 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들이 이주민들이 편견 없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민 역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상호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공존'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즉, 이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동시에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이주민 유입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오히려 국내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에 따른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내국인들을 이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내 여러 이주민 관련단체 및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내국인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주민 지원 단체나 기관들은 내국인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의 역량 강화와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정책방안은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미래 한국사회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장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주청소년들의 경우, 대다수가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발달특성에 따라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시기이며, 이 시기에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탈선 등으로 이어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주청소년들의 경우 새로운 사회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학교의 정규교과과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감향상 프로그램이나 사회성 훈련프로그램, 성취동기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토론문

이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여
: 필리핀 사례

정헌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1. 이주와 개발

국제이주는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개발과 관련한 기존의 패러다임, 즉 일국적/국가중심적 발전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발전패러다임이 위로부터의 기획/전략으로서 단선적인 발전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 발전패러다임은 아래로부터의 발견/경험/시행착오를 포함하는 복합적, 다면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이민과 이민자, 즉 자발적 영구 이주인 결혼이민,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 그리고 해외유학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기술 이전(knowledge/skill transfer), 송금(remittance) 등 국제적 차원의 재분배를 통해 송출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민수용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특히 송금은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전되는 금융흐름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별첨<표 1> 참조).

이민과 이민송출국에 대한 금융흐름에 대하여, 수원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수의 증가는 공여국의 원조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 연구가 있으며, 한국의 원조배분에도 이주민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Bermeo and Leblang, 2010; Vandercasteelen, 2012, 김은미·정현주, 2016).

또한, 송금과 해외직접투자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최근 연구(Coon and Neumann, 2016)와 특정 국가로부터의 원조가 그 국가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imura and Todo, 2009) 등을 고려한다면, 이주—송금—해외직접투자—원조와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필리핀 이주민과 발전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3월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필리핀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이주민은 2007년 51,000여명에서 2015년 55,000여명으로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이주민 증감 추세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이주민 | 51000 | 47000 | 46000 | 47000 | 47542 | 42219 | 47514 | 53538 | 54977 |

필리핀 이주민 중 노동이주민은 2007년 4,448명에서 2012년 24,271명으로 5.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결혼이주민 역시 동기간 4,324명에서 8,367명으로 2배 가량, 유학생은 동기간 200명에서 530명으로 2.7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로 필리핀에 대한 금융자원이나 지식/기술의 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필리핀에 대한 한국의 원조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별첨 <표 2> 참조).

※ 대필리핀 원조 증감 추세 (약정액 기준, 백만 USD)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원조액 | 13.9 | 54.0 | 204.5 | 65.2 | 48.0 | 255.7 | 140.8 | 37.5 | 142.3 |

필리핀에 대한 한국의 원조 중 많은 부분이 경제인프라구조/서비스섹터(sector II)나 생산섹터(sector III)에 대한 원조이고 이러한 원조가 이주민에 의한 투자, 송금, 지식의 이전이 결합된다면 수원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의 공급자로서의 이민자의 역할보다는 지식/기술/규범의 확산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지역맞춤형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3. 이주와 공공외교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상대국의 정부가 아니라 상대국의 국민을 외교의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한 소통으로 상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국에 대한 매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외교적 활동을 지칭합니다(Melissen, 2005; Cowan and Cull, 2008).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기에는 군사·안보, 경제 등 경성권력(hard power)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부 간 전통외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연성권력(soft power) 및 점성권력(sticky power)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Nye, 2008; Mead, 2009; 김상배 외, 2013).

이에 따라 주요국의 경우 일방향적인 독백형 공공외교를 구사하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쌍방향적인 대화형, 협업형 공공외교를 확대·발전시키고 있습니다(Cowan and Cull, 2008).

동시에 공공외교의 주체와 관련하여 외교부 등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기업, 일반대중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의제와 관련해서도 자국의 이익추구를 넘어 인류 공동의 관심사 및 공유가치창출(csv)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시행하여 본격적인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민은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본국에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요한 대상이자 주체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공공외교 정책은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교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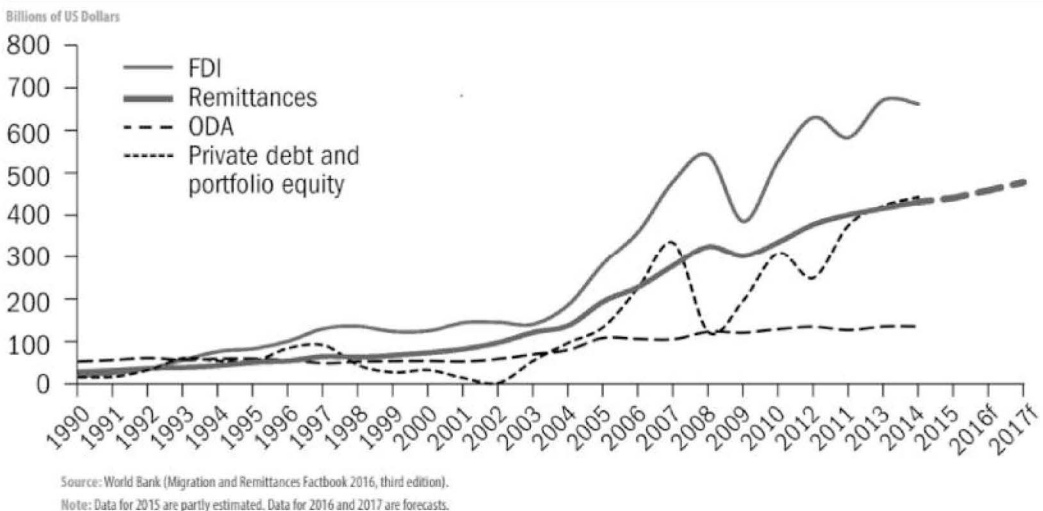
또한 『공공외교법』에 의거하여 작성될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연간 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외교 관련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요 기관임과 동시에 참정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증대되는 영향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공공외교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기관, 이주민, 국제개발/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 <표 1> 개발도상국으로의 송금과 다른 외부 금융흐름

Figure 2
Remittanc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other external financing flows



출처: UN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Development Issues No. 10: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and External Debt" (2017년 3월 24일).

별첨 <표 2> 한국의 2006-2013년 원조총액과 유형별 이민자 수 순위

| 순위 | ODA 총액 | 이민자 (결혼,외국인노동자,유학생) | 결혼이민자 | 외국인노동자 | 유학생 |
|----|--------|------------------------|--------|--------|--------|
| 1 | 베트남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 2 | 아프가니스탄 | 베트남 | 베트남 | 베트남 | 몽골 |
| 3 | 캄보디아 | 필리핀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 4 | 스리랑카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필리핀 | 우즈베키스탄 |
| 5 | 방글라데시 | 태국 | 몽골 | 태국 | 인도 |
| 6 | 인도네시아 | 우즈베키스탄 | 태국 | 우즈베키스탄 | 말레이시아 |
| 7 | 필리핀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스리랑카 | 방글라데시 |
| 8 | 몽골 | 캄보디아 | 파키스탄 | 몽골 | 인도네시아 |
| 9 | 라오스 | 스리랑카 | 네팔 | 방글라데시 | 네팔 |
| 10 | 탄자니아 | 방글라데시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파키스탄 |
| 11 | 이라크 | 네팔 | 방글라데시 | 네팔 | 필리핀 |
| 12 | 앙골라 | 파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파키스탄 | 태국 |
| 13 | 우즈베키스탄 | 미얀마 | 카자흐스탄 | 미얀마 | 미얀마 |
| 14 | 네팔 | 인도 | 스리랑카 | 키르기스스탄 | 카자흐스탄 |
| 15 | 요르단 | 키르기스스탄 | 인도 | 인도 | 캄보디아 |

출처: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5. 1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2014), 김은미·정현주(2016)에서 재인용.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토론문

재한 베트남공동체 활동 소개
: 본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웅 연구원

(제주가족여성연구원 / 전 서울시외국인명예부시장)

우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이주민에 대한 생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해 베트남공동체 2주년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활동보고와 새해 사업계획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놀랐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2014년에 출범한 민간단체인데 상대적으로 활동계획과 실천이 체계적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젊은 인력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점으로만 해도 베트남공동체의 미래가 매우 기대됩니다.

오늘 <2017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포럼>에서 다시 발표문을 읽어보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세 가지 지점에서 크게 동감하며 그 의미를 같이 되새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구성원 특징입니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결성하였다는 점입니다. 결혼이주여성끼리의 자조 모임, 혹은 이주노동자 단체 이렇게 이분화된 민간단체가 우선 발전했다면, 결합하여 인권에 기반한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매우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민자가 체류비자 신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 특징입니다. 베트남공동체는 이주민 연대 활동, 이주민 자조 활동, 이주민 봉사활동, 본국 지원활동 이렇게 이주민이 주체가 되어 인권기반하에 자립, 봉사 활동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국 오지 어린이 기숙사 건축을 했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스스로를 돕고, 본국을 돕는 다는 것 자체가 한국과 베트남 사회의 브릿지 역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건전한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금활동추진에도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발표자가 말한 것처럼, 이주민 공동체 역량강화의 문제와, 지속적인 본국 발전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 온 것은

한국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시민단체의 형식대로 최근 이주민들 역시 자체 민간단체의 필요성을 느끼며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한계점이 바로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인건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표들 모두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봉사의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활동가 가치 인정 등이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포럼>에 토론자 생각을 몇 가지 공유하고 논의해 볼까 합니다.

1. 이주노동자라는 개념이 ‘단순노무직종’ 노동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 데는 그들의 인권적 기반이 가장 취약하고 무시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는 호혜적 개발 문제는 전문적 지식과 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 중 전문 능력자가 많다고 봅니다. 공정무역, 글로벌 협동조합, 국제적 창업 등을 장려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공정무역, 협동조합보다는 시장수요와 맞춤형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주배경 청소년들 및 그 친구들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 실천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거의 모두 자녀들이 이중 언어를 잘 하기를 원하고 지원기관에서 혹은 자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그 또래의 한국인 청소년들 같이 합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중학생 때 까지는 글로벌 봉사활동이 가장 좋은 루트이겠지만, 특목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미래 무역 사업, 투자 사업에 대한 견학,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 창업 등을 위한 다양한 트레이닝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 이주민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신분과, 한국과 본국의 가족문화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한 관련 활동가들은 노동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역량강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체류자의 경우 국제

적 창업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동포의 경우 브랜드화 된 식당 체인점을 협동조합식으로 개업을 하는 것이 최근에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두고 봐야 하지만, 양국 시장에 대한 노하우와, 이것을 조합원 식의 형식을 갖고 발전하는 등 글로벌 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 한 것들이 ‘노동’이라는 개념과 ‘인권’이란 개념이 기반이 되는 개발로 추진하면서, 지속적이고 인권적이고 상생하는 개발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오해를 풀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이리라 기대합니다.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

Multi-Cultural Human Rights Forum
on Labor Migration and Human Rights
based Reciprocal Development

참고자료

2017년 경기도 다문화가족과 업무개요

〈참고〉 2017년 경기도 다문화가족과 업무개요

I. 비전 및 중점과제

비 전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경기도

목 표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

중점과제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

- ▶ 다문화가족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한국어, 통·번역서비스 등)
-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취업교육, 동아리모임 활성화 등)
- ▶ 다문화가족 소통·화합 지원(다문화가족 캠프, 작은음악회)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
인재 양성

- ▶ 자녀성장 지원(방문학습지, 중도입국자녀 자원, 다문화 고교생 직업교육 등)
- ▶ 이중언어 사용환경 조성(가족환경조성, 다문화말하기대회)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 다문화 수용성 향상(찾아가는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주간 운영
- ▶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기회 확대(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교육)
- ▶ 외국인주민 인권지원 강화(센터 운영, 인권포럼,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II . 2017년 주요업무

- ①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
- ②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인재 양성 추진
- ③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1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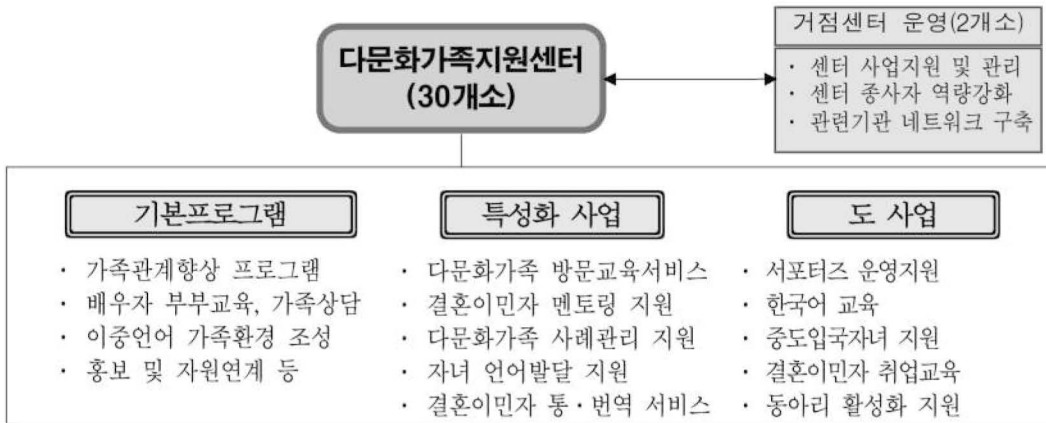
-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
- ◆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로 사회 경제적 진출 기반 마련

□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30개소 2,032백만원

- 가족통합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센터이용 6,696명(가족인권교육 3,134명, 사회통합 등 2,029명, 상담 1,533명)
- 거점센터 운영 : 네트워크 구축, 종사자 실무교육 및 간담회, 사례공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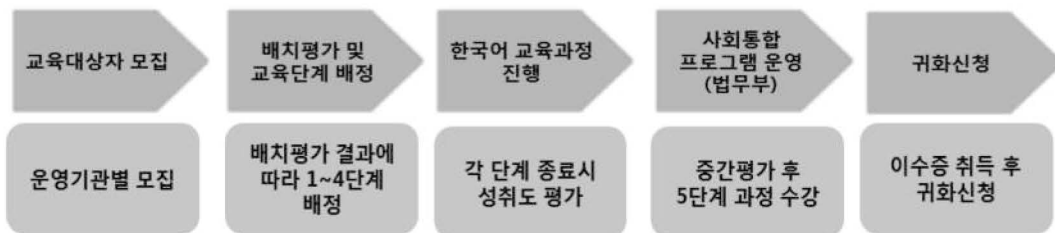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체계]



○ 한국어교육 : 30개 시·군 4,541명 693백만원

- 정규과정(1~4단계), 특별과정(한국어능력시험, 심화반, 예비 학부모 한국어 교육반, 주말반), 문화체험 등

[한국어교육 운영체계]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으로 생활 현장 지원 : 42백만원**
 - 결혼이민자 31개시·군 232명 위촉·운영
 - 어려운 가족 및 상담·정서적 지원,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연계
 - 서포터즈 역량개발 강화 및 공동체 구성원 역할 기대

| <자격기준> | <위촉 인원> | <역 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5년 이상, 한국어 중급 수준 ▪ 활동성이 많은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개시·군 232명 ▪ 위촉기간 : 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 생활지원 등 서비스연계 ▪ 언니처럼 정서적 지원 |

- **통·번역 서비스 및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 606백만원**
 - 통·번역서비스(통번역사 40명) 15,361건, 신문구독 지원(월2회) 38천부
-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3개소 29명 보호 324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회 무료법률 교육 및 상담 : 13회**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및 동아리모임 활성화**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 30개 시·군 82백만원**
 - 시·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정 운영, 일자리 연계
 - 다문화강사, 한식조리사, 산후도우미 등 31개 과정 414명
-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 99개 동아리 66백만원**
 - 나라별 전통춤, 육아활동, 자원봉사 등 지원 / 동아리당 150만원 이내

□ **다문화가족 소통·화합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현장 활동가 역량 강화 : 280명, 50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및 서포터즈 네트워크 대회
- **테마가 있는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 130가족 35백만원**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17.9.2~3./양주 크라운해태연수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기회 제공 : 59가족 234명**
 - 기업의 사회공헌 후원('15~'17년), 50가족 195명 방문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 : 25백만원(■신규)**
 - 사회구성원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공연 관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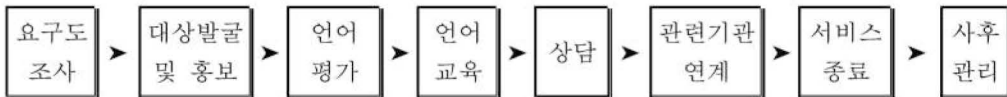
2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인재 양성 추진

-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
- ◆ 이중언어 환경조성으로 자녀 경쟁력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31개 시·군 77백만원
 - 미취학 아동 및 한글 부진 초등학생 “한글, 국어” 교육 지원(1,817명)
 - 주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서비스 제공(대교 눈높이)

- 자녀 언어발달 지원 : 30개 센터 909백만원
 - 언어발달지도사(43명) 활용, 자녀 언어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2,427명(언어평가 592명, 언어교육 860명, 부모상담·교육 975명)



-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 16개 시 52백만원
 - 한국어 교육, 학교생활 준비에 필요한 교육 및 문화체험 266명 지원
- 다문화 고교생 직업교육 : 1개소 250백만원(일자리창출사업 선정)
 - 기계·자동차·회계사무 등 전공직업교육, 지역산업체 취업연계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30개 센터 3,174백만원
 - 방문지도사(400명) 활용, 한국어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1,730명(한국어교육 768명, 부모교육 419명, 자녀생활서비스 543명)

□ 이중언어 사용 환경 조성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프로그램 : 30개 센터, 123백만원
 - 1,005명(이중언어부모코칭 278명, 부모-자녀 상호교육 프로그램 432명,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자조모임) 252명, 가족코칭 43명)
- 제8회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 25백만원
 -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한국어 및 이중언어 말하기
 - 예선 95명(이중언어55, 한국어40) / 본선 20명 시상

3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 내·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친화 분위기 조성
-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인권침해 예방을 통한 권리구제

□ 다문화 수용성 향상

- 내·외국인 대상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31개 시·군 49백만원
 - 강의식 교육, 다문화공연, 문화체험, 캠페인 등 : 186회 9,670명
-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 : 70백만원
 - 청소년·일반인 교육 : 교육과 체험을 통한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유아 다문화 교실(어린이집 등) : 성장기 유아들에게 다문화관련 올바른 가치관 형성
-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소통프로그램 운영 : 100백만원 (☑신규)
 - 가족친화·사랑방 소통모임·특화 프로그램 운영
- “다(多)문화 다(多)함께”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 : 45백만원
 - 공식행사, 상설공연·참여·체험행사 등

□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외국인복지센터 사업비 지원 : 7개소 140백만원
 - 내·외국인 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9개사업)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후 시설 개보수(1개소, 성남시외국인복지센터)
 - ※ 외국인복지센터 : 남부6(수원,성남,안산,시흥,화성,김포), 북부1(남양주)
-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 20개 시 65백만원
 - 근로현장 안전수칙, 산업현장 필수 대화 내용,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운영 등 : 3,035명

□ 외국인주민 인권지원 강화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 1개소 330백만원

- 주요기능 : 인권상담, 인권침해 예방, 인권정책 개발, 네트워크 구축
- 인권상담(71명), 서포터즈 상담(52명), 인권침해 예방교육(4회, 257명),
이주인권 교육(6회, 131명), 성희롱예방교육(2회 56명), 민관협력 네트워크
포럼(3회, 86명),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4명) 등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 협력체계 강화

| 상담기능 강화 | 인권침해 예방 | 인권정책 개발 | 네트워크 강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상담 ▪ 고문변호사 운영 ▪ 상담 서포터즈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예방 교육 ▪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 ▪ 외국인 인권 포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지원단체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외국인 관련단체 인권 강사 양성 |

○ 국제다문화 인권포럼 개최 : 50백만원(■신규)

- 개최식, 유공자 표창, 기조연설, 발표, 토론 등(민간경상보조)

○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 8개시 52백만원

- 고충상담, 노무·법률 상담, 통역 서비스 지원,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 14,236명

○ IOM 이민정책연구원 지원 : 1개소 316백만원

-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지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15.11.1.기준 / 행정자치부)

□ 외국인주민 : 549,503명

▶ 유형별

| 계 | 한국국적 미취득자 | | | | | | 한국국적 취득자 | | | 자녀 |
|-------------------|--------------------|------------------|------------------|-----------------|-------------------|--------------------|------------------|----------------|------------------|------------------|
| | 소계 | 외국인 근로자 | 결혼 이민자 | 유학생 | 외국국적 동포 | 기타 | 소계 | 혼인 귀화자 | 기타 사유 | |
| 549,503 (100%) | 452,632 (82.4%) | 213,808 (39%) | 39,769 (7.2%) | 9,933 (1.8%) | 77,605 (14.1%) | 111,517 (20.3%) | 46,558 (8.4%) | 27,678 (5%) | 18,880 (3.4%) | 50,313 (9.2%) |

▶ 국적별

| 계 | 중국 (한국계) | 중국 | 베트남 | 태국 | 필리핀 | 미국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기타 |
|-------------------|--------------------|-------------------|------------------|----------------|------------------|------------------|------------------|-----------------|-------------------|
| 549,503 (100%) | 236,976 (43.1%) | 68,724 (12.5%) | 43,432 (7.9%) | 38,440 (7%) | 23,843 (4.3%) | 16,883 (3.1%) | 16,762 (3.1%) | 9,637 (1.8%) | 94,806 (17.2%) |

▶ 시·군별

| 계 | 안산 | 수원 | 화성 | 시흥 | 부천 | 성남 | 평택 | 용인 | 기타 |
|---------|--------|--------|--------|--------|--------|--------|--------|--------|---------|
| 549,503 | 75,965 | 51,258 | 46,136 | 43,295 | 32,475 | 29,193 | 27,015 | 26,000 | 218,1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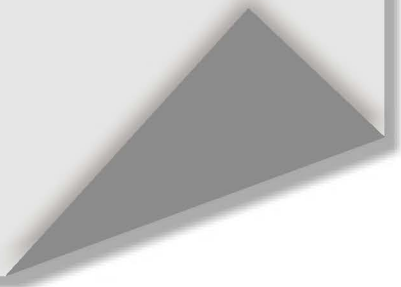
▶ 전국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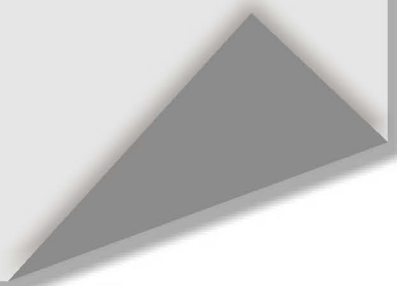
| 계 | 경기 | 서울 | 경남 | 기타 |
|-----------|---------|---------|---------|---------|
| 1,711,013 | 549,503 | 408,083 | 112,387 | 641,0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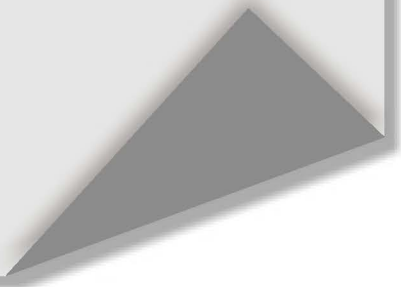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 : 136,6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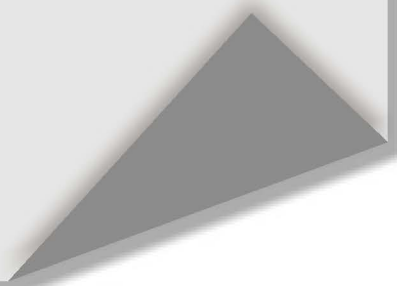
| 계 | 한국국적 미취득자 | 한국국적 취득자 | | 자녀 |
|---------|-----------|----------|--------|--------|
| |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 | 기타사유 | |
| 136,640 | 39,769 | 27,678 | 18,880 | 50,313 |

※ 배우자 미포함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초지동 667-2) 4층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 031_492_9347 전송. 031_492_9349 누리집. www.gmhr.or.kr